

의정부 영석고 사건 관련 자료

: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이유로 불합격 통보한 사건

- 특정종교를 이유로 응시생을 불합격시킨 영석고등학교의 불법 입학업무 처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문책을 요구함 / 전교조 경기지부 보도자료
- 영석고 불합격 처분 취소 요청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 민원처리 결과 통보
- 대법원 판례 선고 75누249(1976,4.27):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김해 여자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제적처분)은 정당하다
- 편견에 맞선 용기: 릴리안 고비티스 대 마이너스빌 교육청 사건/ 민주사회를위한 변론 2003.1/2
- <인권하루소식>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 거부권도 인권 (2003.12.24)
- <인권하루소식>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2004.1.30)
- 기타 기사 모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90-7 창주빌딩 4층

전화 : 031-253-6833 팩스 : 031-253-6835

HOME : chamkk.eduhope.net

보 도 자 료

- 수 신 : 교육 / 사회 부문 담당기자
- 발행 일시 : 2003년 12월 22일 13시(월요일)
- 담 당 자 : 전교조경기지부 부지부장 심우근(016-750-8037)
- 쪽 수 : 3쪽
- 제 목 : 특정종교를 이유로 응시생을 불합격시킨 영석고등학교의 불법 입학업무 처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문책을 요구함.

1. 교육과 사회 민주화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 앞서 12월 20일 의정부지역의 8개 단체들이 밝힌 이번 영석고 사태에 대한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 하며 전교조 경기지부 의견을 발표합니다.
3. 영석고등학교(의정부시 용현동 33-1, 031-846-3007)는 이번 2004년 입학 업무에서 한 응시생(의서중 3년)이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였다. 이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태이다.
4. 우리 헌법 제19조[종교의 자유]에는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누구나 알다시피 신앙의 자유는 물론, 종교 선택의 자유,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등)에는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2항에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헌법과 법률로 학습자의 개성을

중시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국가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학생이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이번에 영석고등학교가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한 학생을 불합격 시킨 처사는 헌법 제 10조, 11조, 19조, 31조를 비롯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77조 1항에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므로 학교장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접하며 영석고등학교의 전신인 옛 복지고등학교에서의 심각한 비정상적 학교파행의 악몽을 떠올리면서 이는 현 학교장의 독선적 학교운영이 빚는 필연이라고 여기고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감독기관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학교장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덧붙여 자신의 학교 학생이 이런 위험, 불법 처사에 내몰려 불합격된 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항의조차 못하는 의정부서 중학교장의 무책임과 비정함도 또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는 특정 종교를 두둔할 의사는 없다. 다만 위험 위법 비민주적 처사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 사태를 교육부와 사법 당국이 명명백백 처리하기를 바란다.

2003. 12. 22. 14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참고 : 이번 영석고등학교의 입학 관련 수치들을 공개함. (불합격 처분을 받은 박 00학생의 내신 점수는 124.88점) 면접일은 12월 12일이었고 발표일은 12월 15일이었음.

※영석고 수석합격자-호원중학교 김00, 내신 148.02 지필 58.5점, 총점 206.52 최소점 합격자 경민중학교 윤00 총점 124.24)

※면접지와 입학원서 사진

2004학년도 비취용지역고교(남) 입학 응시원서

입수번호	지원자격구분	경기도내출신	수험번호	
지원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시번호	일반지원자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동2동		
	보호자성명	전화	031-874-	지원자성명
내신성적	교과합계		출결 사항	봉사 활동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6.46	22.71	41.94	81.13
		20.00	15.00	8.75
			124.88	
학 령	2004년 02월 13일		의정부사중학교	출입예정

No. 642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상응 있음을 증명함.

2003년 11월 21일

의정부사중학교장 직인

2004학년도 고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신입생 선별고사에 응시했으나 합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21일

지원자: [Blank]
부모자: [Blank]

의정부사중학교장 귀하

면접 카드

수험 번호		성 명	한글: [Blank]	전 화	874- [Blank]
출 신 중	의정부시 중학교	성 명	한자: [Blank]	전 화	번호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동2동				
보호자 성명	부: [Blank] (세)	직업	부: [Blank]	가족 사항	남동생 ()
	모: [Blank] (세)		모: [Blank]		
생 활 정 도	[Blank]	특 기	[Blank]	취 미	[Blank]
성 격	[Blank]	장래 희망	[Blank]	업역형	[Blank]
신체의 특기사항	(아프거나 아팠던 부분을 자세히 적으시오)				
본교 재학 형태	학년 반, 성명:			종 교	예호회의 증인
권경하는 인물	1) 포드 2) 미디슨 3) 가이드라인 4)				
좋아하는 과목	1) 기술·가공 2) 과학 3) 역사 4)				
앞으로의 각오 (진로, 직업, 학교생활 등을 요약·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록)					
<p>영석 고등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저의 꿈은 이렇습니다. 저의 꿈은 과학 아버지의 직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자연과학계 관련학과입니다. 전학교에서 최고 진급률이 영석 가면 된다고 말했지만 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과학이 다 좋은 분야거나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사우는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좋은 대학으로 학업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때까지 산에서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호회의 증인이기 때문에 국민에게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p> <p>간우라고합니다</p>					
비고 : 진학 희망 계열을 선택하여 O 표시하십시오					
인문 자연 예체능 직업 기타(가동과다))					

성수영

“책임 교육, 책임 행정”

경기도교육청

우440-702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95-1 / 전화(031)2490-204 / 전송(031)2490-394
중등교육과장 홍경숙 장학관 차가원 담당 장학사 송수현(songteacher@hanmail.net)

문서번호 중등 81100-58
 시행일자 2004.01.06
 수신 강북레님
 참조
 제목 민원처리 결과 알림

보내는 사람: 홍용수 (의정부교육청)
 교사 홍이(010-303-5534)
 받는 사람: 배경내

1. 진정279(2003.12.29)의 관련입니다.
2. 도교육청 민원실에 접수된 “고등학교 불합격 처분”에 대한 진정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인 : 강 북 레(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46-17)

나. 민원내용 : 영석고 2004년 신입생 선발대상자 박준규 불합격 처분취소 지 도 요청 관련 진정

다. 민원처리 결과 :

- (1) 해당학교는 평준화 비적용지역 일반계고교로서 학생 선발에 관한 권한 이 학교장에게 부여된 학교별 전형 실시교이며, 이에 근거하여 전형위 원회에서 마련한 면접 기준에 따라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것은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의 행사라고 간주됨.
- (2) 학생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학교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의 일부를 부정하는 처사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교육 목적 상 이는 학칙이 나 학교의 제반 규정을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학생 선발권을 가진 전형실 시권자 입장에서 해당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판단됨
- (3) 대법원판례(1976.4.27, 대판75누249)에 의하면,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이상승배로 단정하고 그 경례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학칙에 위배되고 교내질서유지에 장애되는 경우, 헌법이 보장 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음.

붙임 : 민원처리결과 통보서 1부. 끝.

참고: 박준규 학생은 1월 27일 오후

프랜시스 문천면 소재 경기도교육청
 영북고등학교에 문천을 접수한 상황임

⇒ 문천이 문천으로 이사 예정



강릉

민원 확인 결과 통보

1. 민원인 성명 : 강복례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46-17
2. 피민원인 : 영석고등학교장
3. 제 목 : 2004년 신입생 선발대상자 불합격 처분 취소 지도 요청 관련 진정
4. 확인일자 : 2003 년 12월 29일
5. 확인자 : 장학사 송수현(경기도교육청 장학사 031-2490-204)
6. 확인 내용(결과) :
 0. 전형요항에는 면접탄에 "수학상 이상 유무만을 판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형위원회 면접기준 내용」에는 "그외 국가, 사회, 학교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사상이나 특수 종교를 가진 학생은 불합격" 조항이 있고, 학교 측은 특정 종교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행동 등이 국가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불합격시킨 것이라고 함.
 0.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 목적 수행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일부를 부정하는 학생에 대한 불합격 처리는 학교의 학생 선발권 및 교육권 행사로 볼 수 있음.
 0. 대법원판례(1976.4.27, 대판75누249)에 의하면,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단정하고 그 경례를 거부하는 행위자체가 학칙에 위배되고 교내질서유지에 장애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음.
 0. 해당학교는 평준화 비적용지역 일반계고교로서 학생 선발에 관한 권한이 학교장에게 부여된 학교별 전형 실시교이며, 이에 근거하여 전형위원회에서 마련한 면접 기준에 따라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것은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의 행사로 간주됨.

1976. 4. 27. 선고 75누249 판결 행정처분취소,제적처분취소 집24(1)행113,공1976 9109

[판시사항]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여자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제적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대한 경례를 종교상의 이상숭배라 하여 거부한 학칙위반 학생을 제적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20조 교육법시행령 제77조,헌법 제16조

원고, 상고인 이화영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피고, 피상고인 김해여자고등학교장 윤대화

원판결 대구고등법원 1975.11.6 선고 73구90판결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학교장으로 있는 김해여자고등학교는 1950.5.16자 총제430호에 의한 국무총리의 국기에 대한 경례통칙과 이에 의한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 및 1973년도 고등학교 학생교련교육지침서에 따라 국기에 대한 예절은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령으로 시작되어 경례방법은 제복 제모를 착용한 학생들은 거수경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학교의 학생인 원고들이 이와 같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것은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위 학교의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보면 원심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학교의 국기경례방법의 교육에 관한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 비추어 이를 거부한 원고들의 행위를 위 학교의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것이라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국기에 대한 예절문제에 대한 법리는 오해하였거나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들 주장의 신앙 양심즉 우상을 숭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그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이상숭배로 단정하고 그 경례를 거부한 원고들의 행위자체를 처분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동시에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로서 모름지기 그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위 학교의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원고들이 그들의 임무를 저버림으로써 학교장인 피고로부터 이권 징계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이고 그들의 신앙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그대로 수긍되어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위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은 위 학교의 학칙(을 제22호증)의 부칙 규정에 따라 피고가 정한 학칙의 세칙임이 뚜렷하므로 위

학생생활지도 규정 제31조는 원고들의 그 학교교육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징계처분의 유효한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하였고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그대
로 긍정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위학생 생활지도 규정 제31조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제적이란 교육법시행령제77조 및 위 학교 학칙 제26조 소정의 퇴학과 같은 내용의
징계로서 단지 용어상의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서 모법에도 없는 새로운 종류의 징계가
설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동 학생생활지도 규정 제31조제1호 '본교 교육방침에 위배
되는 행위' 라는 말이 그 표현에 있어 추상적이고 개괄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들고 이건 징
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도 수긍되기에 넉넉하
다 할 것이니원판결에 학생징계 및 학칙에 관한 교육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원고들의 이건 행위가 위 학교의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것이라 함은 이미 위에서 본 바로서 이를 가리켜 교육방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함은 독자적 견해로 볼 것이다. 다음에 원심이 피고가 이건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직원
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하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하는 등의 위 학생생활지도규정 소정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의용한 을제13호증의 1내지 4의 기재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하여보면 위 인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들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이건 행위로 말미암아 그 학교의 다른 학생들
의 국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상하게 하여 마침내는 학교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어 학교장인 피고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하고 그런데도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
정한 바사실과 같이 피고는 전 교직원들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친 가정방문을 통하여 또는
다른 교회의 목사를 초빙하여 설교를 하게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
구제하고자 지도교육을 하여본 끝에 부득이 이건 제적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에서 원고들
에 대한 이건 제적 처분은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고 하였음을 기록에 의하여 아울러 살펴
볼지라도 타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학교장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
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일규
	대법관	홍순엽
	대법관	양병호
	대법관	강안희

기획연재 1  The Courage of Their Convictions 번역문 이석태(민변)

□ □ □ 편집자 주 □ □ □

이번호부터 Peter Irons가 쓴 The Courage of Their Convictions(1988년 The Free Press 출판)를 번역하여 연재한다. 이 책의 번역은 <책머리에> 부분과 <1장> 이석태, <2장> 강신하, <3장> 김찬우, <4장> 임성택, <5장> 이병기, <6장> 명한석, <7장> 전영식, <8장> 강올리, <9장> 안영수, <10장> 박금섭, <11장> 김선희, <12장> 김홍태, <13장> 정연기, <에필로그> 진선미 변호사가 맡아 하였으며, 번역문 전체의 용어통일과 운문은 이석태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본래의 책 중 로버트 맥 벨(Robert Mack Bell) 케이스 등 3건의 사례는 그 내용이 한국의 법제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번역을 약하였다.

끝으로, 샌디에고 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하고 있는 Peter Irons에게, 이 책의 연재를 허락해준 것에 대해 지면을 통해서나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The Courage of Their Convictions

- 편견에 맞선 용기

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에 이른, 열 세 사람의 이야기 ①

FOR HOWARD ZINN

"Are we historians not humans first, and scholars because of that?"

- Zinn, <The Politics of History>

하워드 진에게

"사람됨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역사가, 또 학자인 것이 아닐까?"

- 진, <역사의 정치학>

▶ 목차 (이후, 연재될 목차 포함)

책머리에

1. 리리안 고비티스 對 마이너스 빌 교육청

- I. “우리는 상징을 통해 존재한다”
- II. “저기 여호와가 온다!”

2. 고돈 히리바야시 對 미국

- I. “일본인은 일본인”
- II. “내가 미국 사람인가?”

3. 제이 D. 웰리 對 루이스 크래머

- I. “양도제한계약”
- II. “결코 떠나지 않는다!”

4. 로이드 베어른블래트 對 미국

- I. “여기는 법원이 아니다”
- II.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만 이름이었다”

5. 데이지 베이츠 對 리틀 록

- I. “그들을 튀겨라!”
- II. “이번엔 돌, 다음엔 다이너마이트”

6. 다니엘 시거 對 미국

- I. “진실되고 온유한 젊은이”
- II. “예” 또는 ‘아니오’란에 표하십시오

7. 바바라 엘프랜트 對 이미지 러셀

- I. “신념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
- II. “우리를 우리로서 있게 해 온 것”

8. 수잔 에퍼슨 對 알칸사스

- I. “천국 어디에선가 존 스크프가 미소짓고 있네”
- II. “성경에 따라 가르침”

9. 메어리 베스 텅커 對 드 므와인

- I. “일어서라! 그것이 네가 여기 있는 이유다!”
- II. “너를 죽이고 말겠다!”

10. 제인 하그슨 의사 對 미네소타

- I. “아이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
- II. “이것은 천한 의술이었다”

11. 조 캐롤 라플류어 對 클리블랜드학교이사회

- I. “계단 오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 II. “집에 가서 아이를 낳아라”

12. 이쉬마엘 재프리 對 조지 알래스

- I. “저런,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나?”
- II. “그들에게 내 아이들에 대해서 말해 주시오”

13. 마이클 하드워 對 마이클 바우어스

- I. “약간 열린 문틈으로 침실을 보았다”
- II. “내 침실에서 무엇을 하는 거요?”

책머리에

1965년 3월 25일 나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증언대에 섰다. 나는 징병법의 2개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 거기에 섰다. 하나는 신체검사를 받기위한 신고를 하지 않아서였고, 다른 하나는 1963년 켄터키주의 포트 크녹스에서 있었던 소집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1958년 규정에 따라 신시내티 교외에 있는 징병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바였으나, 2년 뒤 반송해명서를 붙여 징병카드를 위원회에 돌려보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의 이유를 들어 병역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징병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감옥에 갈 위험을 선택했다.

나의 병역거부는 내가 등록을 마친지 한 달 뒤 안티오크 대학에서 평화주의자, 사회주의자, 민권운동가 및 그밖에 내가 성장한 냉전시기의 아메리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바의, 도시근교에 사는 대부분의 중산층 이웃들이 갖고 있는 보수적인 가치관 - 컨트리 클럽, 회사 사무실과 안락한 교회에서 마주치는 그런 류의 가치관에 동조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이웃을 좋아하고 그들과 같은 외모, 즉 백인에다가 잘 입은 옷차림새를 하고 있었지만, 생각에서는 여러 점에서 "달랐던" 까닭에 장차 - 한 때는 오하이오주 옐로우 스프링스의 지하철 정거장이었던 - 안티오크에서 불복종과 저항운동에 참여할 참이었다. 나의 가족은 유니테리언 교회(삼위일체설을 부인하고 신은 하나뿐이라고 믿는 기독교의 일파 - 역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거기서는 관용과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탐

구를 강조했다. "길 건너 교회(The Church Across the Street)"의 주일학교 공부중에 나는 유대교 사원, 흑인 5순절 교회, 그리스 정교회의 미사들과 불교 의식을 구경했다.

나의 양친들은 또한 나와 여섯 형제 자매들에게 인종주의를 혐오하도록 길러 주셨다. 나는 1954년에 있었던 브라운 사건(the Brown case)에서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흑백이 분리된 학교에 다녔는데, 버튼우드의 길 아래쪽 작은 마을에 사는 흑인 아이들이 왜 우리학교에 다닐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1957년 리틀 록 학교 사건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었을 때, 나는 우파계열의 지방신문 칼럼니스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는 - 매일 아침 "깨어라, 미국인이여!"라고 외쳤다 - 연방대법원을 공산주의자들의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나는 "시대착오적인" 그의 견해에 반대하여 연방대법원을 옹호하는 한편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 법의 목적을 재정립하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의무"라는 내용으로 투고를 했다. 매우 놀랍게도, 그의 칼럼에 내 편지가 언급되었는데, 그는 이런 악의적인 질문으로 끝을 맺었다: "분명히 이 소년에게 이런 생각을 가르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자가 누구인가?" 나의 선생님 한 분이 답장을 썼다: "제퍼슨, 톰 페인, 에머슨과 소로우가 그를 가르쳤다." 그 선생님은 그 편지를 쓴 아이가 나인줄은 알지 못했지만 - 칼럼니스트가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 - 그가 옳았다.

3년 후인 1960년 10월 나는 몇몇 흑인 친구들과 백인 친구들과 함께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the Student Nonviolent Coordinating Committee ; SNCC)'의 첫 전국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워싱턴 D. C.에서 아틀란타로 여행했다. 나는 이미 메릴랜드 교외에서 있었던 연

좌농성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짧게 구금된 일이 있었는데, 그 무렵 나는 안티오크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하워드 대학 출신의 흑인 학생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 아틀란타의 SNCC 대회 - 나의 첫 남부지방 여행이었다 - 는 감동적이었고 나를 고무시켰다. 마틴 루터 킹, 제임스 로우슨 및 리처드 그레그 같은 간디의 후계자들이 한 연설에 감화를 받아 나는 워싱턴에 되돌아 온 후, 여전히 흑백 분리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를 무력에 의존하여 지키기 위한 제도적 상징인 병역카드를 반송하였다.

1961년 안티오크에 돌아와 나는 "징병제에 대한 대안 -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공개장"이라 불린 유인물을 썼다. 그것은 "마음속 깊이 믿고 있는 바의 도덕률에 어긋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비폭력적이고 직접적인 연좌농성 방식의 항의 운동에 동의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병역카드를 돌려 보내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이 유인물 5,000부를 중서부 대학에 돌렸지만, 그것을 읽고 내 입장을 따라 동참한 학생들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반대로 테가 좁은 모자를 쓰고 트랜치코트를 입은 전형적인 차림의 FBI 수사관 2명이 이 일을 주목하여 안티오크에 나타났다. 그들은 두 시간 동안 나를 닥달하더니 선동혐의로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들은 다시 오지 않았다.

4년후 나는 FBI수사관이 주변 어딘가에 여전히 포진해 있지 않나 의심하면서 존 W. 펙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에 소환되었다. 변호사는 배심이 있는 재판을 포기하도록 조언하였는데, 신시내티에 있는 연방 배심원들은 대개가 퇴역한 재향군인회 회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결정은 결과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다.

펙 판사는 적의감에 불타 있었다. 내가 징병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했다. 나의 주장은 "하나님(Supreme Being)" 조항에 대한 이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이 조항은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하여 자기의 양심에 따라 징병을 거부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였으며 - 나는 연방대법원 판례를 조사해 보았다 - 토르카소 대 와킨스(Torcaso V. Watkins) 사건에서 공직에 임명되거나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떠한 종교적 테스트도 할 수 없도록 한 1961년의 연방대법원 판결을 펙 판사에게 제시하였다. 메릴랜드에서 공증인 자격을 얻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맹세를 하여야 하는데 로이 토르카소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으며, 연방대법원은 그의 이의를 지지하였던 것이다.

펙 판사는 눈에 보이게 짜증스러워 하면서 내가 하는 헌법 얘기를 들었다. 내 말이 끝나자 그는 판사석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젊은이, 자네 어디에서 로스쿨을 다녔나?"라고 경멸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의 말투와, 간단하게 나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 모욕적이고 화나게 했다. 그는 내게 연방교도소에서 3년간의 복역을 명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나의 변호사는 연방 항소법원에 상소하여 내 재판이 있기 불과 수주일 전에 선고된 시거 사건(the Seeger case)에서 연방대법원이 "하나님"조항을 무효화시킨 판결을 인용하면서 펙 판사의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변론했다. 연방항소법원의 판사들의 의견은 2대 1로 갈렸는데, 다수의견은 덴 시거와 달리 나는 병역면제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까닭에 종교적 테스트에 대한 이의사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외로이 반대의견을

낸 조지 에드워드 판사는 병역면제 신청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에서 내가 신청하지 않은 것이므로 내 경우도 시거 사건의 예에 따라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항소심에서 패소 후 나는 선고된 형을 복역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에서 이길 희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다시 상소할 비용도 없었고, 미국시민권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도와 달라는 나의 요청을 거절했다.(그 이래 나는 시민권 연맹을 용서하였으며, 현재 나는 샌디에고 지부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1966년과 1969년 사이에 나는 2년 이상 연방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석방된 후 나는 보스턴 대학의 정치과학부 대학원에 입학하여 1973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5년 후 나는 하바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법률지식을 연마하면서 나는 징병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을 반복해 달라는 청구를 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온 후 연방대법원은 징병적인 징집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 나는 징병위원회와 FBI 기록으로부터 나에게 대한 처벌이 징병반대를 선동한데 대한 징벌로서 이루어진 것을 증명했다. 신시네티의 연방판사는 징병을 거부했다고 하는 유죄 기록을 삭제해 주었다. 나는 여전히 펙 판사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다. 나는 내가 하바드 로스쿨을 졸업하였으며 나에게 대한 유죄판결이 무효화되었다는 사실을 쓴 편지를 펙 판사에게 보냈다. 나는 그가 내 사건과 이제 막 미국이 전쟁에서 진 베트남에 대해서 어떤 덧붙일 의견이 있는지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다 - 아니, 없소 펙 판사와 내 재판에 대해서 마무리 말을 하자면 이렇다 : 의문과 분노는 그것이 건설적인

배출구로 이어지면 가치있는 감정이 될 수 있다. 나는 이 책이 그러한 배출구라고 생각한다.

내가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쓴 것은 내가 왜 이 책을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왜 내가 나와 달리 연방 대법원에까지 자신들의 사건을 가지고 간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로스쿨을 다니면서 나는 수백 건에 달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읽어보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건 당사자들의 묘사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종이 위에 기록된 이름들로 존재했다. 내가 법률을 가르치기 시작한 후, 나는 연방대법원이 내린 최악의 판결 3건, 즉 1943년과 1944년의 전시에 일본계 미국인들을 수용소에 가두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한 판결들에 관한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 사건의 피고인들 - 고든 히라바야시(Gordon Hirabayashi), 민 야스이(Min Yasui) 및 프레드 코레마츠(Fred Korematsu) - 을 찾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로부터 그들이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총구의 위협아래 수용소로 인도되는 것에 대하여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저항한 용기를 배울 수 있었다.

그 책, '전시의 정의(Justice at War)'에서 한 연구를 통해 나는 정부측 법률가들이 3건의 사건 모두에서 연방대법원에 거짓말한 사실을 분명한 증거를 들어 밝혔다. 그들의 부모들이 수용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젊은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나는 내가 나의 징병법 위반 사례에서 썼던 같은 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고든, 민 및 프레드의 유죄 판결을 무효화시키도록 도왔다. 그들 사건이 법원에서 진행되어 가는 동안 - 1983년에 시작되어 1988년에 종결되었다 - 많은 다른 미국인들이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연방대법원에 제소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이들을 찾아 얘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펴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가 보기에 중요하고 흥미있다고 생각한 열 세 건의 사례를 선택했다. 그 사건들은 50년에 걸쳐 있으며, 4개의 주요 문제, 즉 종교, 인종, 저항 및 프라이버시를 포함하고 있었다. 나는 이 열 세 건의 사례들이 그 시대와 쟁점들을 적절히 대표할 것으로 느꼈다. 내가 고른 어떤 것들은 개인적 연관이 있어서였다. 나는 고든 히라바야시를 변호했고, 나 자신의 징병법 위반 사건은 댄 시거 사례에 힘입었으며, 바바라 엘프브랜트(Barbara Elfbrandt) 사건은 뉴 햄프셔에서 있었던 충성 서약사건을 수행하는데 인용한 일이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다면 반드시 이 사례들을 고르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똑같이 중요한 수십 건의 사건들이 있었으며 스스로 재판을 시작한 수많은 흥미로운 인물들이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한가지 점은 실제로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그들이 지켜온 원칙과 양심 때문에 법정에서 섰다는 것이다. 그들 모두가 연방 대법원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살아 있는 헌법에 대한 믿음을 공유했다.

존 F. 케네디 상원의원은 1955년 그의 책 '용기있는 사람들(Profiles in Courage)'를 출판했다. 그는 그의 마음에 드는 8명의 - 모두 백인이고, 남성이며 상원의원인 - 미국인들 초상을 그렸다. 이 책에 소개된 열 세 사람은 보다 선명하게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그들은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다. 그들은 흑인, 백인, 아시아계 들이다. 그들은 게이이고 스트레이트(Straight, 게이에 대응하는 '이성애인'의 속어; 역주)들이다. 그들은 목수, 바텐더, 의사 및 변호사들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구역에

살고 있다. 그들은 다양한 성격의 종교관과 무신론자임을 표방한다. 그들은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데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많은 빛이 있다. 처음으로 돌아가 나의 양친 앨다와 러스티 아이언스는 나를 올바르게 키워다. 하워드 진(Howard Zinn)은 감옥에서 쓴 나의 편지들에 답장을 보내 주었고 대학원 입학을 주선했던 준 외에, 지도교사이자 친구로서 그리고 헌신적인 학자의 모범이 되어주었다. 그는 우리가 만나기 이전인데도 그의 책을 나에게 헌정하기조차 했다! 이제 20년이 지나 나는 그에게 지고 있는 감사의 빛을 갚는다. 보스턴 대학에서 하워드가 가르친 '미국에서의 정의' 강의에서 그의 조교로서 일한 경험은 그가 쓴 대로 "우리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면서 갖는 작은 모임들이 정의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로렌스 H. 트라이브(Laurence H. Tribe)는 나의 하버드 수학시절 헌법에 관해 큰 가르침을 주었다. 레리는 또한 "살아 있는 헌법"은 그 우호자들로부터는 계속해서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고, 그 적대자들에 대하여는 흔들림 없는 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수용소 사건에서의 나의 작업은 대일 미나미, 돈 타마키, 로리 바나이, 데니스 하야시, 페기 나가에, 로드 카와카미, 마이크 레옹을 비롯하여 백인 사회에서 같이 성장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게 했다. 크리스타 키저는 그녀를 훌륭한 인품의 목사로 이끈 '목자'의 정신으로 나를 고무시켰다. 로이드 가드너는 1988년 탁월한 인물에게 부여되는 '라울 왈렌버그 인권 교환교수(Raoul Wallenberg Distinguished Visiting Professor of Human Rights)'로 러처스에 나를 초빙하였는데 이 책으로 그 영예에

보답하기를 희망한다. 덕 맥코믹과 러처스의 역사학부는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 주었다. 샌디에고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내 동료 해리 허쉬와 폴 클레멘스, 데이비드 오선스키 및 로이드 가드너는 이 책 원고에 대하여 귀중한 조언을 주었다. 내가 러처스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조교로서 도와준 리차드 모서는 이 책의 사진 배열에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을 편집한 조이스 셀처는 사려깊은(이말이 지나치다면 용서해 줘요, 조이스) 비평과 넘치는 열광으로 나를 지원해 주었다. 조지 로우랜드는 빈틈없이 원고를 정리해 주었다. 프리실라 룡은 내 삶의 거의 절반을 보살피 주었다. 그녀는 내가 가졌던 의문, 실망, 그리고 좌절을 나누어 가졌다. 이 책이 완성된 이래 그녀는 내가 갖는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자기의 얘기를 말한 열 세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의 도시와 마을로 간 나를 환영해 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와 공유하였으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춰 온 감정을 드러내 보여 주었고, 그들이 겪은 사건과 삶에서 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어준 용기와 신념을 말해 주었다. 그들은 나를 뉴욕, 시카고, 세인트 루이스에서 리틀 록, 모빌, 투스콘, 솔트 레이크 시티, 세인트 폴 등 광대하고 아름다운 나라의 많은 도시로 인도했다. 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보기 위하여 - 비행기, 열차, 지하철 및 그레이하운드 버스로 - 미국을 횡단하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뿌리를 발견했다.

나 자신의 삶을 고무시켜 온 두 가지 서술로 이 서문을 끝맺고 싶다. 두 가지 모두 나에게 중요한데 하나는 다소 상스러운 것이고, 하나는 의미심장한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먹

고 싶지 않은 똥 같은 게 있다!”고 외친 ‘올라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저자 시인 커밍스(Edward Estlin Cummings)의 외침이 있다. 이 책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 가해진 모욕적인 대우와 편협한 행위에 순응하는 것을 거부했다. 끝으로 1859년 안티오크 대학에서 졸업생들에게 한 강연에서 호레이스 만(Horace Mann)은 이렇게 훈계했다. “인류애를 위한 일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부끄러워 하라.” 이 책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한 모든 이들은 인류애를 위한 일에서 승리했다.

릴리안 고비티스 對 마이너스빌 교육청 Lillian Gobitis V. Minersville School District

I “우리는 상징을 통해 존재한다”

1935년 11월 6일 열린 마이너스빌의 펜실베니아 교육 위원회에 올려진 안건은 다만 하나였다. 찰스 E. 대부쉬 교육감은 그가 1914년 부임한 이래 마이너스빌 관내 학교에서 매일 관례적으로 해온 국기경례행사에 세 학생이 작당하여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엄격한 훈육 실시에 대하여 남다른 자부심을 가져온 교육감은 특히 월터 고비티스 (Walter Gobitis)에 대하여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의 애들인 릴리안과 윌리엄이 처음으로 국기경례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루대부쉬와 고비티스는 지난 달 그 문제에 대하여 논의했으나, 논쟁만 가열되었을 뿐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없었다.

월터 고비티스와 그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es)에 속해 있었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그 열정적인 전도행위와 로마 가톨릭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취한 탓으로 90%가까운 주민이 가톨릭인 마이너스빌과 같은 마을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 고비티스는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한 마이너스빌 토박이로서 학생 때는 국기경례 의식에 참여했었다. 그와 그의 가족은 1931년에 증인이 되었는데, 릴리안이 8살, 윌리엄이 6살이었고, 1935년 10월 초순경까지는 아이들은 매일 국기경례를 했다. (성이 “Gobitas” 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서

기가 실수로 철자를 잘못써서 연방대법원도 “Gobitis”라는 성을 사용하였으며, 지금까지 그렇다)

필라델피아 북쪽 구릉의 무연탄 광산 지역으로서 인구가 만 여명인 마이너스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관과 합일을 이루지 못하는 종교적 자유와의 충돌이었다. 국기경례의식은 전쟁 중에 공립학교에서 시작되었다. 뉴욕의회는 1898년, 미국이 스페인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한 다음날 처음으로 국기경례를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5개 주만이 국기경례법을 발효시켰으나, “100% 미국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퇴역 군인들이 1919년 설립한 재향군인회 (American Legion)는 설립된 해의 프로젝트로서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그 뒤 10년 동안 ‘해외전쟁참전 퇴역군인들 모임 (Veterans of Foreign Wars)’, ‘미국혁명의 딸들 (Daughters of the American Revolution)’ 및 ‘KKK단 (Ku Kluk Klan)’이 재향군인회의 캠페인에 참여했는데, ‘KKK’단은 1920년대의 ‘애국적’ 행동에 합류함으로써 위신을 얻으려고 했다. 1935년이 되자 18개 주가 국기경례법을 입법하였으며, 다른 주의 경우 수백여 개의 지방 교육 위원회가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국기경례

의식에 참여하도록 결의했다.

수많은 미국 사회에서 수업 개시 때 행해지는 국기경례의식에 처음 반대한 학생들이 고비티스 집안의 아이들은 아니었다. 1차대전 중이던 1918년 초 애국적 열기와 독일에 대한 적개심이 나라를 휩쓸던 때 평화주의자들로서 대체로 독일계 교회에 속하는 일단의 메노파 신도 아이들이 국기경례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퇴학에 처해졌다. 이후 15년 동안 나라안 여기저기서 국기경례사건들이 미국시민권연합에 접수되었는데, 어떤 경우도 강제적인 국기경례의식 참여에 대하여 헌법적인 문제제기를 한 일이 없었다.

1935년 초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헌법에 근거한 법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증인 독일 지부가 강제적인 국기경례의 의식을 거부하자 이들의 종교적 활동은 1933년 히틀러의 명령으로 금지되었는데, “애국적이지 못한” 증인들이 나찌의 선전을 돕고 있다는 주장은 모순이었다. 독일의 증인들은 학교와 모든 공공 의례에서 “손바닥을 보이며 들어올리는” 파시스트 경례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저항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만명 이상이 수용소에 구금되었다. 이러한 박해에 대응하여 미국 여호와의 증인의 지도자인 죠셉 F. 러더포드 (Joseph F. Rutherford)는 1935년에 열린 전국대회에서 국기경례를 강제하는 법률을 비난하였다. 러더포드는, “증인들은 ‘하일 히틀러’건 그밖의 어떤 대상에 대하여도 경례를 하지 맙시다.”라고 신자들에게 말했다.

메사츄세츠의 린에 사는 3학년 학생 칼톤 니콜스는 러더포드의 연설이 끝난 후 그의 교시

를 마음에 새겨 두었다. 그 해 초 메사츄세츠 주는 나찌와 같은 방식으로 “손바닥을 보이게 들어올린” 국기경례를 학생들에게 의무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칼톤이 국기경례를 거부한 후 아이와 함께 학교에 온 아버지가 아이와 둘이서 국기경례 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서 있는 것을 거부하자 그의 아버지는 체포되었다.

신자들이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러더포드는 변호사였는데, 그는 칼톤의 아버지가 체포되자 전국의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칼톤이 “슬기로운 선택”을 하였으며, 다른 증인들도 “똑같이 슬기롭게 행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윌터 고비티스와 그의 가족은 - 그 방송을 들을 수 있었던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 라디오를 통하여 러더포드의 연설을 들었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고 있던 릴리안과 윌리엄이 칼톤 니콜스의 모범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거부는 법률상 그들을 혼내줄 방도가 없음을 알고 있는 루데부쉬 교육감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주의회와 지방 교육위원회 모두 국기경례를 의무화시키지 않았으며 국민의례 참여를 거부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처벌조항도 두지 않고 있었다. 윌터 고비티스에 대한 참여 중용이 먹히지 않자, 루데부쉬는 주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위원회가 국기경례 참여를 의무화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퇴학시킬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얻었다.

1935년 11월 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위원들은 윌터 고비티스와 국기경례거부자 대열에 참여한 6학년 학생 에드문드 와슬리스키의 어머니가 국기경례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

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들 못 참겠다는 태도로 앉아 있었다. “우리는 미국 국기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비티스가 말했다. “우리는 국기에 대하여 불경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경례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쓰여 있으며,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고비티스는 거짓 신을 본 따 만든 어떠한 “우상”에도 “절하지” 않도록 신앙인들에게 경고하는 출애굽기 20장을 위원들에게 인용했다. 고비티스는 찬동할 의사 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기는 세속 정부를 지배하는 우상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계 가톨릭 신자인 내과 의사로서 영향력 있는 마이너스빌 주민인 토마스 J. 맥걸 박사의 동의로 위원회는 모든 학생들은 “일과외 하나로 국기경례 의례를 하며” 의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행위로 간주되어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루데부쉬는 이어서 “본인은 릴리안 고비티스, 윌리엄 고비티스와 에드문드 외슬류스키에게 이와같은 불순종행위, 즉 학교에서 국기경례를 하지 않는데 대한 조치로 마이너스빌 학교로부터의 퇴학을 명한다.”라고 공표했다. 윌터 고비티스는 “이 조치에 대하여 제소하겠습니다.”라는 작별의 말을 루데부쉬와 위원회에 남기고 모임을 떠났다.

18개월이 지난 후 고비티스는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약속을 지켰다. 이 기간동안 릴리안과 윌리엄은 마이너스빌로부터 30마일 떨어진 곳에 여호와의 증인이 임시로 설립한 학교에 다녔다. 브루클린 본부로부터 지원된 증인 소속의 변호사들과 미국시민권연합의 도움을 받아 고비티스는 1937년 5월3

일 필타델피아 소재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릴리안과 윌리엄의 “친권자”로서 제출된 그의 소장에서 그는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이 “인종을 차별하는 주법”에 따라 아이들로부터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연방헌법 수정14조의 적법절차조항은 의회가 시민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방헌법 수정1조의 권리를 주와 지방정부가 빼앗아서는 안되도록 금하고 있다고 소장은 기재했다.

하나의 집단으로서 1930년대의 연방판사들은 정치면에서나 주와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한 헌법쟁송을 다루는데서나 대체로 보수적이었다. 공화당 전임자들이 연방 대법원과 하급연방법원에 종신제의 보수적인 판사들을 임용함으로써 개혁에 좌절을 겪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판사 충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적 소란은 윌터 고비티스가 소장을 제출한 직후에 정점에 도달했다. 고비티스로서는 운 좋게 그의 사건이 루스벨트가 펜실베이니아에 처음 임명한 판사인 앨버트 B. 매리스에게 배당되었다. 매리스는 평화주의와 관용으로 유명한 작은 종교그룹인 퀘이커 교도였지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수훈을 세우기도 했다.

마이너스빌 교육위원회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신속히 소를 각하해 달라고 매리스 판사에게 촉구하면서, 그 이유로 국기경례행사는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교과과정의 일부로 채택된 단순한 “세속 규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단순히 마이너스빌 학생들의 “건강, 안전, 복지 및 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권”을 행사했을 뿐인데, 이것은 법원이 연방의 간

섭에 대항하여 전통적으로 보호해 온 권한인 것이다. 위원회의 변호사들은 미국 헌법은 주와 지방 공무원들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아울러 칼튼 니콜스가 제기한 소를 각하한 매사추세츠 최고법원의 판결을 포함하여 국기경례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몇 개의 주 법원 판결을 매리스 판사에게 제시했다.

위원회의 항변을 들은 후에, 매리스 판사는 고비티스의 소를 각하하는 대신 본안에 회부하여 1938년 2월에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판사는 결정문에서 쟁점이 되는 권리는 미국 연방 헌법 수정1조가 아니라 펜실베이니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며, 펜실베이니아 헌법은 주와 지방정부의 침해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썼다. 이 권리는 교육위원회가 주장하는 “경찰권”보다 우월하며, 미국연방 헌법 수정1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권에 포함된다. 매리스 판사는 “이 원칙을 적용할 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법적 정당성을 갖느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는 당해 개인이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매리스 판사가 사건을 본안에 회부하자, 릴리안과 윌리엄 고비티스는 또렷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과 왜 국기경례행사에 반대하는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들의 뒤를 이어 루데부쉬 교육감이 아이들의 말에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며 증인석에 가 앉았다. 아이들이 종교적 신념에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고 매리스 판사가 묻자 루데부쉬는 “미리 주입식 교육을 받은 것 같다.”고 하며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국기경례 반대자가 아주 소수라 해도 “원칙을 파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가 훌륭한 미국인이 되기 위하여 애국심 함양이 필요한 “여러 유형의 외국

인”과 함께 마이너스빌 학생들에게 “우리 국가와 나라에 대한 무관심”을 퍼뜨릴 거라고 그는 주장했다.

1938년 6월에 선고된 최종판결에서 매리스 판사는 “증거에 의할 때, 이 신앙심 깊은 기독교인 아이들이 국기경례를 거부한다고 해서 동료 학생들의 안전, 건강, 도덕, 재산 또는 개인적 권리들이 손상된다거나 해를 입는다고는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릴리안과 윌리엄 고비티스가 보여준 “신념을 지키는 진지함과 원칙에 대한 헌신성”을 “개척자인 우리의 선조들이 양심의 자유를 찾아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게 한” 그것에 비유했다. 매리스 판사는 마이너스빌 교육위원회에게 고비티스 아이들을 복학시키고 국기경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면제해 주도록 명령했다.

릴리안과 윌리엄은 결코 마이너스빌 학교에 돌아가지 못했다. 매리스 판사는 교육위원회의 항소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항소법원에 계류되고 있는 동안 그의 명령을 보류시켰다. 다시 18개월이 지난후 3인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만장일치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은 윌리엄 S. 클라크 판사가 썼다. 클라크는 공화당원이었지만 1925년에 처음 연방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후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1938년 항소법원으로 끌어 올려졌는데, 그것은 지방당국으로부터 언론과 결사의 자유권을 탄압 받아온 노동조합 조직가들을 클라크가 사법적으로 지원한데 대한 보상이었다. 노동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뉴딜 법안을 연방 대법원이 1937년 승인함으로써 마무리가 된 “헌법혁명”의 승리에 힘입어, 루스벨트는 1938년까지 모든 연방사법부를 일신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는데, 고비티스 사건을 심리한 판사 3인은 모두 그가 임명한 법관들이었다.

클라크가 쓴 판결은 국기경례 강제법에 대한 모델로 가득차 있었다. "18개의 커다란 주들이 얼마 안되는 수의 어린이들에 대하여 그들의 권력을 쏟아 부은 것처럼 보인다."고 그는 시작했다. 경례의 강제는 "지금 우리의 보호를 구하고 있는 어린 소녀와 소년이 특별하게 지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는 상반될 수밖에 없다." 주의 "경찰권"을 지지하는 100개 이상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클라크 판사는 사법의 저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의견들은 너무 가벼워 종교적 믿음에 따라 거부하는 사람들의 주장 위에 설 수 없다고 판시했다.

두 차례의 패배 후 마이너스빌 교육위원회는 처음에는 연방대법원에 제기하는 최종 상고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애국적"인 단체들로부터의 약속들이 초기에 보인 위원회의 망설임을 압도했다. 연방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한다고 해서 판결을 얻으리란 보장은 없었다. 근년에 있었던 다섯 건의 사례에서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하급법원에서 판결한 국기경례 사건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다만 그 사례들은 모두 주 법률이나 지방 법률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반면 클라크 판사의 판결에 대한 상고에서 심리를 회피하는 것은 클라크 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이 요인과 함께, 애국심과 충성심의 문제를 제기한 사건의 변론 개시여부를 결정하면서 연방대법원은 유럽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전운을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이너스빌 교육위원회에 의하여 선임된 필라델피아 출신 변호사인 죠셉 W. 헨더슨은 1940년 4월 25일 연방 대법원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나 이미 두 차례의 하급심 재판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주장을 되풀이했다. 헨더슨이 한 주장의 핵심은 국기경례행사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나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논지였다. 두 명의 법률가가 윌터 고비티스와 그의 아이들을 대리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조지 K. 가드너는 미국시민권연합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와 지방공무원의 행정처분이 연방 헌법 수정1조와 충돌될 때 헌법이 우월함을 강조했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이끌기 전에 개업 변호사였던 조셉 러더포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국기경례법에 반대하는지 신학적 이유를 다시 개진했다.

9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고비티스사건을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평의실의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모여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연방대법원장 찰스 에반스 휴즈(Charles Evans Hughes)였는데, 그는 전에 국무장관이었고 1916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다. 그는 동료 판사들에게 사건이 "종교와는 관련이 없으며" 단지 교실에서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주의 권한이 있느냐 여부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대하여 평의중 유일하게 발언한 다른 판사는 펠릭스 프랭크퍼터(Felix Frankfurter)였는데, 그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오스트리아 국적의 유태인으로서 열두살의 나이에 뉴욕에 도착했다. 2년 후에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애국심과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기 위하여 링컨이 전쟁 중에 한 연설을 암송할 정도로 매끄러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평의에서 이민의 자손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 넣는 것과 관련된 공립학교의

역할에 관하여 감동적인 의견을 편" 프랭크퍼터에 감화되어 휴즈 연방대법원장은 그에게 고비티스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어느 판사도 평의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즈는 프랭크퍼터가 만장일치의 판결을 쓸 것으로 생각했다.

프랭크퍼터는 "자유와 권위가 충돌할 때" 연방대법원은 그 조화점을 찾기 위하여 "중대한 책임감"을 부여받고 있다고 판결의 서두를 시작했다. 그는 양자를 타협시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파괴하는 것을 막도록 고비티스 사건이 법원에 강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종교적 반대자들을 위한 피난처로서 미국의 역사적 역할은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한 주장들에 모든 가능한 여지를 주어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해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프랭크퍼터는 연방헌법 수정1조가 보장하는 권리 속에 입법기관에 의한 권리 제한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주장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종교적 믿음이 "시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고 썼다. 프랭크퍼터는 시민들 사이를 "서로 응집시키는 연결 고리"의 상징으로서 국기를 숭모했다. 그는 그가 숭배하는 법조인의 영웅 올리버 웬델 홈즈 (Oliver Wendell Holmes) 판사가 한 "우리는 상징을 통해 존재한다."는 말을 인용했다. 프랭크퍼터는 또 국기경례 행사를 점증하는 전쟁방어의 관심에 연계시켰다 : "국민의 단합은 국가안보의 초석이다." 그는 릴리안과 윌리엄 고비티스를 국기경례로부터 면제시키는 것은 "다른 아이들의 마음에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고"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킬수 있다는 경고를 담아 시민에게 주는 그의 교훈을 끝맺었다.

프랭크퍼터는 그가 쓴 판결이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할랜 피스크 스톤(Harlan Fiske Stone)이 동료 대법관들 사이에 반대의견을 돌리자 기분이 상했다. 스톤은 "국가 안보"가 수정1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능가할 수 있다는 프랭크퍼터의 주장을 직접 겨냥했다. 국기경례 규정이 고비티스의 아이들로 하여금 "신의 보다 높은 명령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을 강제로 부정하게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종교적 신념과 어긋나게 하고 있다."고 스톤은 썼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개의 법률들이 여호와와의 증인들같은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수자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호와와의 증인들은 그들의 적극적인 전도에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거의 관용에 입각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랭크퍼터는 스톤에게 사신을 보내어 반대의견을 철회하도록 요청했는데, 그 편지에서 프랭크퍼터는 막 이론 전개를 시작한 "사법적 자체"의 입장을 표현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사법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함으로써 주와 지방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조이는 고삐"를 매게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프랭크퍼터는 그가 쓴, 공간된 판결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지구적 규모의 전쟁이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환기시켰다. 전쟁에 대비하여 애국적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국기경례 논쟁을 해결하는 데에 "분명히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는 스톤에게 말했다. 이와 같은 사신의 교환은 사법 권한의 해석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의 판사들 사이에 근본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프랭크퍼터는 "헌법의 추"가 "정부의 기구"쪽으로 기울어져야 한다고 믿

는 반면에 스톤은 종교의 자유쪽으로 "기울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프랭크퍼터는 사법 철학의 해석에 관한 이 논쟁에서 8대 1로 이겼으며, 연방 대법원은 1940년 6월 3일 마이너스빌 교육위원회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종종 비판을 받으며 어떤 판결들은 불복종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일찌기 고비티스 판결처럼 폭력적인 대중의 반응을 도발한 예가 없었다. 프랭크퍼터의 말들은 나라 전반에 걸쳐 여호와의 증인들을 공격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지 2주일 이내에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수백회의 공격들이 법무성에 보고되었다."고 두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후에 썼다.

법무성 관리들은 가장 폭력적인 몇몇 사례들을 열거하였다. "켄터키와 메인에서 왕국회관이 불에 탔다. 로크빌과 메릴랜드에서는 경찰이 폭도를 도와 성경모임을 해산시켰다. 리치월드와 일리노이스에서는 실질적으로 마을 전체가 떼를 지어 그 마을에 전도활동을 한 60명 가량의 여호와의 증인들을 습격하였는데, 그 구역 회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 군대의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연방공무원들은 "경찰 서장과 군 보안관서리가 일단의 여호와의 증인들을 경찰에서 쓰는 밧줄로 묶어 서로 이은 후 강제로 비버 기름을 먹인 다음 희생자들이 웨스트 버지니아의 리치우드 거리를 행진하게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공포심을 느꼈다. 마찬가지로 네브라스카의 여호와의 증인이 자경단에 의하여 납치되어 구타당한 후 거세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었다. 연방 공무원들은 이러한 테러들이 고비티스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로부터 직접적인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법무성 파일은 판결 선고 후 2년 이내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폭력과 박해가 무차별하게 자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거의 예외없이 국기와 국기경례 사건이 이러한 행동을 촉발시키는 뇌관이 되었다."고 그들은 썼다.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공격은 국민들의 관심이 유럽과 태평양의 전쟁터로 옮겨가자 줄어들었지만, 그들이 받은 피해가 널리 알려짐에 따라 정의의 궁극적 결정권자로서의 연방대법원의 이미지는 손상을 입었다. 저명한 신문과 학자들이 연방대법원에 대한 비난을 쏟아 부었다. 1942년의 판결에서 세 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들 - 윌리엄 O. 더글라스 (William O. Douglas), 휴고 블랙 (Hugo Black) 및 프랭크 머피 (Frank Murphy) - 은 연방대법원이 고비티스 사건을 "잘못 판결"했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판결을 번복하기 위하여 그들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더글라스가 블랙이 마음을 바꾸었다고 알리자 프랭크퍼터 판사는 블랙이 헌법전을 읽고 있는지 힐난조로 물었다. "아니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소"라고 더글라스가 대답했다.

새로 임명된 두명의 판사, 윌리 루틀리지 (Wiley Rutledge)와 로버트 잭슨 (Robert Jackson)이 고비티스 판결 후에 연방대법원에 들어왔다. 그들이 던진 첫 번째 표는 미래의 사건에서 여호와의 증인 쪽으로 "저울의 추를 기울게 할"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연방 대법원은 1943년 초 다수 의견으로 사실관계에서 고비티스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웨스트 버지니아의 국기경례 사건을 재판하기로 결정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찰스톤 가까이 살고 있는

세명의 여호와의 증인의 자녀들 - 월터 바네트 (Walter Barnette), 루시 맥클루어 (Lucy McClure) 및 폴 스톨 (Paul Stull) - 이 학교에서 축출되었는데, 주교육위원회는 1942년 프랭크퍼터가 고비티스 사건에서 쓴 판결에서 거의 그대로 따온 국기경례 규정을 채택하고 있었다.

잭슨 판사는 바네트 사건에서 웨스트 버지니아 법에 일대 타격을 가하는 판결을 썼다. 강제적이고 압제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단합”을 꾀하려는 기도가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종교적 반대자들을 “마을의 무뢰한”과 “악당”들에게 내맡기게 했다고 잭슨은 경고했다. 잭슨은 강제된 믿음이 무익하다는 예로 “로마가 기독교 박멸로 나아간 것”과 “현재 전체주의 적국들에서 그런 시도들이 급속하게 실패해 온” 사실을 들었다. “강압에 의하여 반대의견을 없앤 사람들은 곧 그들 자신이 제거되어야 할 반대자의 처지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강제력에 의한 의견의 통일은 마치 무덤에서의 만장일치와 같은 결과를 낳을 뿐이다.”

프랭크퍼터 판사는 연방헌법 수정1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지방 관헌과 선거구민 다수가 제한을 가하는 경우로부터 보호하기를 거부했었다. 잭슨 판사는 이 경의를 표할만한 입장을 직접 겨냥했다 “권리장전을 제정한 중요한 목적은 정치적 논쟁의 부침으로부터 어떤 주제들을 가려내어 다수와 관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놓아두는데 있다.”고 그는 썼다.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신앙과 집회의 자유 및 기타 기본권들은 투표로 결정될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어떠한 선거의 결과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잭슨은 독립선언서에서 미국인들이 최초로 표현한 자유옹호론자의 윤리를 열렬하게 받아들이며서 끝을 맺었다. “우리 헌법의 별자리에

서 어떤 부동의 별이 있다면 그것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관리도 정치, 조국애, 종교 또는 기타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 있어서 정통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시민들에게 그들이 품고 있는 신념을 말이나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네트 사건의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불과 3년 전에 다만 한 사람의 반대의견만 있었던 고비티스 사건의 판결을 명시적으로 번복했다. 이와 같은 번복의 상징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연방대법원은 1943년 6월 14일 - 국기의 날 - 웨스트 버지니아 국기경례법을 무효화시켰다.

II “저기 여호와가 온다!”

나는 1923년 펜실베이니아 마이너스빌에서 태어났다. 나의 양친 모두 또한 마이너스빌에서 출생했다. 어머니는 네델란드계 펜실베이니아 사람이었는데 모친의 가족은 200년 이상 거기서 살아 왔다. 아버지의 가족은 리투아니아에서 한달이나 걸린 여행으로 곧장 마이너스빌로 왔다. 마이너스빌에는 리투아니아인과 중부유럽 인이 많았다. 나는 그들이 어떤 연고가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석탄 광산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할머니는 자수성가한 여성이었는데, 읽을줄 조차 몰랐다. 그녀는 다만 재산을 모으기만 하였다. 유럽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는 것을 덕으로 생각한다. 그녀는 간이식당을 열고 하숙을 쳤다. 후에 식료품가게를 열었는데, 나의 아버지 소유가 되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하게 되자 사업을 하나씩 차려주었으

며, 삼촌 하나는 대학을 보냈다. 작은 농가 아낙네치고는 특별한 일이었다.

우리는 '싸게 파는 식료품상'으로 불리운 가게 건너편의 큰 집에서 살았다. 자식이 모두 여섯이었는데, 내가 맏이었다. 우리는 식료품 가게에서 일해야만 하였는데 그 일을 매우 좋아했다. 아버지들 태반이 석탄 광산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은 꽤 괜찮은 일이었다. 어떤 아이들은 광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나 낙석으로 아버지를 잃기도 했다.

공황기동안 마이너스빌은 어려웠다. 나는 모두 노랗게 바랜, 사람들에게 청구할 계산서를 끼워놓은 작은 장부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을 기억한다. 어떤 사람들은 결코 갚지 않았으나, 그는 결코 독촉하지 않았다. 마침내 공공사업이 촉진되고 구호정책이 시행되자, 꽤 도움이 되었다. 그 방안들은 매우 유익했다. 나의 삼촌은 공공사업 근로중에 심장발작으로 사망하여 숙모는 정부의 구호를 받았다. 적어도 우리는 식료품이 있었다. 그밖의 다른 모든 것은 자체 조달하였다. 우리는 바느질하는 법을 배웠고, 주로 헌옷을 입고 지냈다. 못견딜 게 없었다. 우리는 정말로 화목한 가족이었다. 일하면서 우리는 그 시대의 옛날 라디오쇼를 들곤 했다.

아버지는 가톨릭교도로 성장했고 어머니는 양친이 1904년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도였다. 어머니를 비롯한 자녀들 모두 감리교 교회에서 매우 열심이었다. 처음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감복된 사람은 나의 아버지였는데, 조부모가 얼마동안 우리와 살러 왔을 때였다. 그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전념하는걸까? 그들이 가버리자 그는 그들이 주고간 책자들을

보게되었는데, 그들은 억지로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로부터 돌아오면 그는 우리가 배운 것을 묻고, 우리에게 이것 좀 봐라, 저것 좀 봐라고 말씀하시곤 하였다. 그는 지옥이 고통이 아니라 다만 사람을 묻는 보통의 무덤이라고 지적한 성서 귀절과, 우리 또한 문자 그대로 지상의 낙원을 뜻하는 것으로 느낀 이사야서의 매혹적인 절들에 열광적인 관심을 보였다. 곧 우리는 집에서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교회는 가지않게 되었다.

1935년 여름 여호와의 증인 와취타워 협회(Watchtower Society of Jehovah's Witnesses) 회장인 러더포드 판사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성서가 우상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하여 강연했다. 그는 국기경례를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나라의 표상인 국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서에서 나라의 이미지에 대한 숭배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나, 그 학교들을 매우 좋아했다. 나는 학교를 사랑했고 좋은 그룹에 들어 있었다. 나는 실제로 인기가 있었다. 나는 중학교 1학년으로서 학급 회장이었고, 성적도 좋았다. 그래서 '아, 내가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기를 그만 둔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거라고 느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진행될 게 분명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되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쪽을 쳐다보면 재빨리 손을 내밀고 입으로 웅얼거리곤 했다. 우리는 메사츄세츠 린에 사는 칼톤 니콜스가 학교에서 국기경례를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퇴학당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다.

내 동생 윌리엄은 1935년 가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다음날 빌이 집에 와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드디어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 일은 나의 부모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었다. 부모는 우리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어서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데에 아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나름대로 검토도 해 보았다. 그래서 실제로 내 스스로 결정을 했다.

나는 한 번 시작한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 먼저 안나 쇼프스텔 선생님에게 갔다. 그녀는 내 설명을 듣고나서 놀랍게도 바로 나를 안아주고는 그런 용기를 가지다니 가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급우들은 염려스러웠다. 실제로 반 아이들 모두에게 설명을 하여야 했지만 두려웠다. 나는 일어서 있거나 앉아 있는 편 중에서 어느 쪽이 올바른 태도인지 몰랐다. 오늘날 우리는 경례 그 자체는 동작과 말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쨌든 나는 앉아 있었는데 교실 전체가 아연실색했다. 그 일이 있은 후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저기 여호와가 온다!"는 등의 고함을 질러댔다. 그들은 나를 조롱하였다. 내 여자친구 몇몇이 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이런 것은 괜찮았다. 일대 일이 훨씬 쉬운 법이다.

그들은 두 주일 동안 내 동생과 나, 그리고 경례를 하지 않는 또 하나의 여호와의 증인인 에드먼드 외슬류스키 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 내 동생의 경우는 선생님이 강제로 그의 팔을 올리려고 애썼으나 동생은 아예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2주일 후 교육위원회가 소집되어 아빠와 엄마가 모임에 갔다. 양친은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자랐으며 그들과 같이 학교에 다녔다. 교육감인 루데부쉬 박사는 매우 완고한 타입이었고,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맥굴박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빠는 교육위원회에서 왜 우리들이 국기 경례를 할 수 없는지 말했다. 아빠는 우리에게 교육위원회 모임이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결정을 했다. 그 취지는 우리가 불복종을 하고 있고, 따라서 즉시 퇴학조치가 내려져야 된다는 것이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모임에서 "내일부터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시오!"라고 말했다.

우리가 퇴학당한 후 집에서 학교 수업을 받았다. 약 16세된 소녀가 어머니를 도와 3층에서 우리를 가르쳤다. 우리는 교과서는 그대로 가져도 좋다고 허락받았다. 그 직후에 공문이 왔는데, 공인된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소년원에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정말 문제였다. 우리는 자격이 있는 교사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모든 언론이 퇴학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어느날 폴과 베르나 존이 우리집에 전화를 걸어 그들이 펜실베이니아 뉴 링골드에 학교를 설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100에이커의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정말 임시변통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훌륭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식당과 거실 사이의 벽을 터서 커다란 시골학교를 만들었다. 우리를 포함하여 모두 40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세 가족이 우리들의 식사준비를 도왔다. 우리들 2명은 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우리는 세 사람이 한 침대를 써야 했는데, 복도 여기저기에

침대들이 놓여져 있었고, 어디서나 사람들로 붐볐다. 우리는 6시에 일어나 청소를 해야 했다. 그러나 재미있는 일이 많았다.

농장은 마이너스빌로부터 30마일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주말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했다. 길은 2차선의 좁은 간선도로여서 30마일을 가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통학버스를 마련해야겠다고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는 점포에서 쓰는 소형 용달트럭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양쪽에 의자를 만들었다. 우리는 아침 6시에 출발하여 가는 길 내내 꼬맹이들을 실었는데, 어둡고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서로 밀치락달치락 하였다. 두시간 걸려 학교에 도착한 후 더러운 길을 따라 내려가면 집들이 몇 채 있었다. 아빠는 두시간 동안 차를 운전했다. 우리는 우리의 시련을 비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잘 지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가엾은 일이었다.

회관학교에 엘리노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있었는데 우리는 의좋은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1935년 초 유치장에서 만났는데, 그 때 뉴 필라델피아의 마을에서 습격을 받아 소방서 내의 유치장에 놓여진 것이었다. 그 곳 교회들은 폭도들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 예배를 일찍 끝내주었다. 뉴 필라델피아에서 가정을 방문하는 전도를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수는 대략 40명이었다. 나는 혼자서 어떤 집의 문 앞에 있었는데, 경찰차가 와서 나처럼 어린 여자애를 데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그집 주인이 경악해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 때 열 한살이었다. 경찰이 나를 차에 타라고 한 후 나를 데리고 폭도들 옆을 지나 소방서로 갔다. 나는 어떤 소녀가 나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폭도들이 소방서문을 부수려고 애쓰던 것을 기억한다. 사람들 수가 거진 삼천명이었음에 틀림없다.

우리는 말썽을 예상했고, 그런 종류의 일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기는 했다. 무서운 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침내 그 소용돌이의 한 복판에 놓이게 되면 어떤 평온함을 느끼게 된다. 드디어 그 날 늦게 폭도들이 흩어졌다. 경찰이 남자들을 유치시켰고, 여자와 아이들은 집에 돌려 보냈다. 그들은 종래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재판관을 받으러 갔다. 나는 그들이 그 후 불과 며칠간 구치소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 사건은 펜실베이니아의 모크 청크, 맥아두 및 쿨포몽트에서 있었고, 뉴저지의 플레인필드, 세코커스 및 펄스 엠보이에서 있었던 유형의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많은 습격사건 중의 하나였다. 아버지도 여러차례 습격을 받았는데, 모두 그룹을 지어 가가호호 전도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러번 며칠간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내가 이 일행을 따라 다니는데 주저한 것은 공립학교에서의 친구들을 생각해서였다. 그러나 왕국회관의 학교에서 훌륭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손실은 분명히 없었다.

마이너스빌에서 우리가 홍보물을 가지고 거리 전도를 하던 어느날 두 소녀가 지나갔다. 그들은 나의 가까운 학교친구들이었는데, 나는 그들이, "재가 우리 친구였다는 걸 생각좀 해 보렴!"이라고 말하는 걸 엿들을 수 있었다.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안에 있는 소녀가 가족에게, "저 애가 그 릴리안 고비티스예요"라고 말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우리는 왕국회관 학교로 갔기 때문에 서로 볼 수 없었고 꽤 낯치않게 되었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 학급 전체에서 가장 머리좋은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뒤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9일 전에 플로리다에서 열린 여호와의 증인 대회에서 만났다. 그녀는 그녀 어머니에게 "고비티스네 가족

이 어디로 간거죠? 릴리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이사간 게 틀림없어요”라고 물은 일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법정에 갈 때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퇴학당한 후에 마이너스빌에 있는 가톨릭 교회 하나가 우리 가게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을 의미했다. 가게는 더 많은 아이들을 갖게 된 우리 가족의 생계 유지수단이었고, 그래서 매우 중요했다. 영업실적이 아주 많이 떨어졌다. 때때로 아빠는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숙모집에 동생을 보내 돈을 융통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얼마 후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이 일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신부가 사람들에게 우리 가게에서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말해 주었다. 아빠는 실제로 잘 알려져 있었고, 파머 소세지와 혼제 소세지를 만들어 가게를 운영했다. 사람들이 이런 물품들을 사러 여러 곳에서 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이콧 때에도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가 되었다.

왕국회관 학교는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뿐이어서 나는 2년 후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나는 아직 학교에 다녀야 할 때여서 파츠빌에 있는 상업학교에 갔는데, 4마일 정도의 거리여서 집에서 다닐 수 있었다. 나는 거기서 1년만 보냈다. 그 후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구했다. 우리가 뉴 링골드에서 구한 교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에 대해서 큰 동정심을 가지고 있어서 알렌타운에서의 직책을 그만두고 한달에 1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우리를 가르치기로 자원했다. 모든 가정들이 어떤 방식으

로든 준비하여 그에게 비용을 지불했다. 그녀의 이름은 에르마 메츠거였고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녀는 후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그것은 축복받은 일이었다. 경매에서 하나에 30센트씩 주고 학교 책상을 구입했고, 책과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은 목공일을 하여 구했다.

우리는 퇴학당한 데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으나, 교육위원회가 우리사건에 대해서 매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와취타워협회는 우리사건을 시범사례로 쓰고 싶다고 말했다. 어떤 학교들은 매우 관대하여 단순히 아이들을 돌려보내기만 하였으나, 수천명의 아이들이 심한 대우를 받았는데, 벽에 부딪힌 것처럼 매를 맞고 못견뎌 하며 울면서 집에 왔었다.

나는 우리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매우 생생하게 기억한다. 필라델피아의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매리스 판사는 과묵하고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무시무시해 보이기 커녕 매우 가까이하기 쉬운 타입의 사람이었다. 빌과 나는 당사자가 되어 증언해야만 하였다. 빌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이 우리가 국기경례를 하지 않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요한 1서 5장 21절의 ‘어린 아이들아, 우상을 멀리해라’는 구절을 설명했다. 나는 교육위원회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이의 있습니다!”라고 한 말을 기억한다. 우리는 하나의 성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의 이의는 기각되었다. 루테부쉬는 증언석에서 매우 신경질이었으며, 화가 나 있었고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우리측은 결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적대감도 느끼지 않았다. 성서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언젠가 그들도 변하리라고 희망을 가져야 하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우리는 사건에 대하여 아주 낙관하게 되었다. 매리스 판사는 아주 훌륭한 판결을 썼으며, 항소법원의 판사 세 사람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이 워싱턴으로 옮겨지자, 나의 가족은 연방대법원의 변론을 방청하러 갔다. 첫 번째 사건은 회사 관계 소송이었으며, 분주한 발걸음과 소란속에 많은 질문들이 이어졌다. 그리고나서 미국시민권연합의 가드너씨가 우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시작했다. 연방대법관들은 아직 그의 변론에 완전히 주목하지는 않고 있었다. 이어서 러더포드 판사가 우리 사건을 변론했다. 그는 샤프라, 메사, 아벤고가 느브갓네살의 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던 성서의 예를 들어 논리를 전개했다. 물론 법률상의 쟁점도 거론했다. 그것은 방청객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연방대법원 판사들도 매우 주의깊게 들었다.

이처럼 열중된 분위기를 보고, 우리는 매우 낙관적이 되었다. 몇 달이 지난후 우리는 부엌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뉴스시간이 되자 오늘 워싱턴에서 연방 대법원이 국기경례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다는 말이 들렸다. 결과는 8대 1로 우리가 졌다. 우리는 정말이지 그럴 줄 몰랐다. 박해의 폭풍우가 몰아쳤다. 여호와의 증인을 사냥감으로 한 수렵 시즌이 도래한 것 같았다. 폭도들이 점점 증가했다. 일리노이스의 리치필드에 있는 왕국회관이 폭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이후 3년 동안 매년 3천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체포되었다.

때때로 우리들 일단의 침대들이 밖으로 나가 마을 가정들을 방문할 때면 곧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주석 깡통과 돌들을 우리에게 던지곤 하였다. 우리는 차를 가까이 정차시켜 놓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곤 했다. 나는 좀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가정에서

성경공부시간을 가졌던 수요일 밤들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각자 도로를 따라 방문하였다가 마지막 사람이 우리를 뒤에 데려가도록 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아빠를 모셔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차 타이어에 핑크를 내고 둘러쌌다. 나는 속도를 내기 위하여 가속기를 밟았는데, 아버지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사람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다반사로 일어났다. 여호와의 증인들 중 일부는 공격을 받아 심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앨러바마의 오펔리카에 사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부과된 면허세에 이의를 제기하여 연방대법원에까지 갔던 로스코 존스같은 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는 흑인이었으며, 그의 아내는 조지아의 라 그랑주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그녀를 면회하기 위하여 지방 교도소에 갔다. 사람들이 그를 지하실로 끌고 가서 팔 다리를 벌리고 서게 한 후 낡은 자전거 타이어로 때리고 갈비뼈와 위장 부분을 가격했다. 마침내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깨어나 보니 감방이었다. 그는 4, 5일후에 석방되었는데 간수들이 그에게 권총을 겨누면서 다시 그 블랙 박스-그의 책가방-를 들고 이곳에 나타나면 콩알맛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심한 꼴을 당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상해의 결과로 죽기도 했다. 그리고 때때로 기적처럼 피신하기도 했다.

우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후 내 동생 빌은 브룩클린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세계 본부에 불림을 받았다. 거기서 우선 그는 상근하면서 우리가 파이오니어라고 부르는 봉사업무를 행했다. 우리 가게는 언제나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그는 사실 그에게 할당된 가정방문 전도의 몫을 제대로 채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뉴욕으로 옮길 기회를 얻어 이주 소액의 집세만 내고 브롱스에서 몇 사람과 같이 살았다. 그러자 그는 “릴리안 누나도 이쪽으로 오는 게 어때”라고 제안했다. 그 무렵 남편은 군대문제 때문에 코네티컷의 덴버리에 있는 감옥에 있었다. 수백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직자로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쟁중에 감옥으로 갔다. 우리는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직자라고 생각하지만, 징병위원회는 그렇게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나는 뉴욕 브롱스로 옮겼다. 매우 재미있는 곳이었다. 내 파트너는 감옥에서 만나 같이 왕국학교에 다닌 엘리노어였다. 우리는 각자 스무군데 가정에서 성경공부를 가졌다. 세계상황이 나빠진데다가 전쟁이 계속중이어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다. 우리는 그 시절에 기부금으로 생존했다. 5센트면 지하철로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때때로 소액이나마 집세를 낼 때가 되어 걱정이 되면, 자그마한 키의 나이든 숙녀께서 “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치하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 일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이때금씩 사람들은 작은 금액의 기부금을 내기를 원했고, 그것으로 그 달 집세를 충당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정말로 훌륭한 시절을 보냈다.

몇 달후에 나는 브룩클린에 있는 세계 본부에 불리워 갔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었는데, 왜냐하면 세계각지에서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계 본부로 오기에 앞서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생활 양식 또한 갖가지였다. 여성들이 거기서 봉사하도록 불리워지는

일은 많지 않았는데, 대개 일이 많았고 주로 청소하는 일이 할당되었다.

본부에는 또한 뉴욕과 코네티컷에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국이 있었는데, 나는 매일 방과 후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방송되는 쇼 프로그램의 작은 역을 하나 맡았다. 그것은 ‘라첼과 존 아저씨’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었다. 내가 라첼역이었고, 존 아저씨는 나이든 신사분인 맥밀란씨가 맡았는데, 나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주는 역이었다. 맥밀란씨와 같이 일하는 것은 보통의 특권이 아니었다. 그는 1919년 애틀란타 교도소에 수감된 8명의 와치타워 임원중 한 사람이었으며, 40년대의 전쟁중에는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들을 위문하기 위하여 21개소의 교도소를 순회 방문했다. 러더포드 판사가 죽은 후 와치타워 협회의 회장이 된 노르씨는, 나에게 그 프로그램을 맡긴 이유로서 국기경례 사건을 들었다! 그 사건이 문을 열어준 것이었다.

우리가 사건에서 패소한 후, 우리는 어쩔수 없는 일로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 세계에서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고, 우리는 독일에서 끔찍한 소식들을 들었다. 수용소에서 만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구금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2천명이 살해되었다.

우리는 그 때 성경에서 이 모든 세상사의 종말이 되는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때가 올 때까지 그런 일들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다만 인내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느낌이었다.

1943년 우리는 바네트 사건에 관한 연방대법원에서의 변론을 방청하기 위하여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우리가

겪은 국기경례 사건과 거의 같은 사건이었다. 사건 당사자가 모두 사촌간이었다. 스톨집안과 맥클루어 집안은 바네트 집안과 사촌간이었다. 그들 또한 법정에서 있었으나, 아무도 우리를 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몇 년 전에 이름이 데이브 맥클루어라고 하는 목사 한 사람이 이곳 애틀랜타까지 여행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참석한 모임에서 나의 남편은 그가 독일 수용소에서 겪은 경험담을 말해 주었다. 그 자리에서 어원은 “데이브씨, 우리에게 당신 사건에 관한 경험담을 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요청했다. 그것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는데, 왜냐하면 알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결말을 모르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언제나 그에게 싸움을 걸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는 물러서지 않는 성품이어서 싸움박질이 일상사가 되었다. 그들의 사건이 법원으로 가자 상대방 변호사는 그 사건이 결론이 분명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생략했다. 고비티스 사건의 선례가 있지 아니한가, 그것으로 그만이지!

바네트 사건에서 우리는 이번에는 마치 터널 끝에서 비치는 빛을 보고 있는 것처럼 훨씬 더 낙관적인 느낌을 가졌다. 우리는 재판을 받으러 올 일은 다시는 없을 거로 생각했다. 이미 머피와 더글라스 및 블랙 판사가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우리는 또 머피 판사가 그가 주지사로 있던 미시간 주의 국회의 사당에 걸 자신의 초상화를 어떤 화가에게 그리게 하고 있었는데 그 화가가 여호와의 증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초상화 모델로서 앉아 있는 머피 판사와 장시간 얘기를 나누었는데, 머피는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언론과 ‘그

시절 이야기(My Day)’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던 엘리노어 루스벨트 여사가 칼럼에서, 그리고 법무부장관 비들 모두가 우리에게 대해 동정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우리를 공산주의자들처럼 다루다니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그들은 말했다. 이 아이들은 신념을 따랐을 뿐인 어린이들이다. 그리하여 분위기가 바뀌었으며, 연방대 법원은 1943년 6월 14일 국기의 날에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자 우리의 일은 전체적으로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판결 선고 직후 뉴욕 이타카에서 길리아드 학교라 불린 선교 학교가 문을 열었다. 우리는 전 세계로부터 어떤 직업이든지 관계없이 사람들을 모집했다. 국수주의는 너무나 무지한 것이어서, 우리가 인종적, 민족적 또는 경제적인 경계를 설정할 때 우리는 우정의 풍요로움을 잃게 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훌륭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 1951년 유럽에서 일련의 대회가 열렸는데, 맥밀란씨가 나에게 비행기표를 주었다. 그의 아들이 유럽에서 군대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맥밀란씨에게 비행기표를 보내준 것이었다. 그는 “라첼양, 나는 이제 늙고 쉬 피로해지는 데다가 유럽에 가서 자주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곤 했어요. 당신은 꽤 가고 싶을테니 부디 이 비행기표를 쓰세요”라고 나에게 말했다. 정말이지 나는 가보고 싶었다! 나는 세계 본부 소속으로서 유럽에 있는 모든 지부에 머물수 있도록 허락받았는데, 독일 비스바덴 지부에서 어원 클로스를 만났다. 어느날 저녁 친목회 모임이 있었는데 피아노와 바이올린 콘서트가 있었으며 노래도 불렀다. 어원은 훌륭한 테너여서, 나는 노래가 끝나자 일어서서 그에게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웃기만 했고 나는 말을 계속했는데, 후에 그가 영어를 단 한 마디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독일과 점령지의 네델란드와 벨기에에서 열 한 번 체포되었으며, 게슈타포가 항상 그의 뒤를 쫓곤 하였다.

어원은 속성으로 하는 단기 영어 코스를 밟은 후에 이타카의 선교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그 학교를 졸업한 후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오스트리아로 보내졌으며, 나 또한 길리아드 학교를 통하여 거기에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1954년 나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향해하여 그와 결혼도 하고 선교일도 할 목적으로 합류했다. 우리는 비엔나에서 정말 동화같은 삶을 살았다. 회고해 보건대, 내가 친구를 잃은 바로 그 사건, 국기경례 사건이 노르씨로 하여금 내가 봉사일을 하도록 주선해 주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동화같은 삶을 산 것이었다.

우리가 미국에 돌아온 후 나는 얼마동안 일을 하러 다녔고, 어원은 뉴욕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일은 철로용 충전(充塡)기계를 만드는 사람을 대리하여 하는 일로서 그 사람은 우리가 비엔나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어원의 사업은 아주 성공적이어서 뒤에 백만 달러 상당의 사업체로 성장시켜 팔았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캐나다에서 6년간 산 후 1967년 애틀랜타로 왔다. 우리는 도움이 보다 많이 요구되는 곳에 가려고 했다. 우리는 뉴욕과 캐나다에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틀랜타로 옮기게 되면서 이동 주택에서 살기로 작정했다. 우리는 2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같은 이동주택에서 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내 동생과 내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학교에서 겪은 문제를 갖지 않았다.

애틀랜타로 옮겼을 때 스티븐은 열두살이었고, 주디스는 열살이었다. 그들은 학교에서 하는 국기경례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그것이야말로 모든 재판의 목표였던 것이다. 어느날 주디스가 집에 와서 여자아이들 모두가 여학생실에서 그 애를 기다리고 있다가 밀쳐 넘어 뜨리길래 그애들과 싸움 끝에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어원이 내게 학교에 가서 상담교사를 만나보라고 권해 갔더니, 주디스가 여호와의 증인이라서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했다고 상담교사가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 시절은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던 때였는데, 우리는 주디스가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도록 했다. 그것이 주디스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주의를 끌게 된 우스꽝스런 사건의 단초였다. 상담교사는 "우리학교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학부모들에게 연락하여 모두가 사과하도록 하였다.

내가 국기경례 사건에서 법정에서 50년 이상이 지나갔지만, 같은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하겠다. 주저함이 없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가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나를 박해한 바와 같이 너희 또한 박해할 거'라고 하셨다. 우리는 종말이 오기 전에 커다란 박해의 물결이 밀려 올 거라고 예감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현재 40개 이상의 나라에서 종교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호별 방문에서 종교에 대한 무관심을 만나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 국기경례 사건은, 그 사건이 없었다라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어원과 나를 포함하여 여전히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사건에서 얻은 교훈들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2003년 12월 24일 (수)

제 248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경기도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가 종교적인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고 밝힌 응시생을 불합격 처리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석고등학교는 이 학교에 응시한 ○중학교 3학년 박모 씨에 대해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 사회, 학교 등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 및 기타 이념을 가진 학생은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 불합격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의정부지회 등 8개 단체들과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20일과 22일 잇달아 성명을 발표,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시킨 학교측의 처사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학교측은 박 씨의 '종교' 때문이 아니라 그의 '국가관'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이유로 학생의 교육권까지 박탈한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홍보부의 정운영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생명이 없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보고 거부해 왔으며 실제 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우상숭배로 보는 것은 일반 기독교계도 마찬가지"라면서 "그렇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제 학생의 교육권을 박탈한 경우는 76년 대법원까지 갔던 김해여고의 사례를 제외하곤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76년 대법원도 학교측 손 들어줘

76년 대법원(재판장 이일규 대법관)은 김해여자고등학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 6명을 제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우상을 숭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그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단정하고 그 경례를 거부한 원고들의 행위자체를 처분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일부 학생들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국기에 대한 경건한 마음까지 상하게 하여 학교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학교측이 이들을 제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운영 씨는 "당시 대법원 판결은 국가주의가 종교에 준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던 시대적 상황에서 나왔던 것"이라며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일한 일이 되풀이된 데 대해 어이없어했다.

송기춘 교수(경남대 법행정학부)도 "학교가 동일한 국가관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거나 자신의 종교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립학교라고 할지라도 그 규정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구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미 판례는 경례 거부권 인정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1943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판례가 확립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윌터 바네트 대 웨스트 버지니아 주교육위원회' 사건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내쫓을 수 있도록 한 웨스트 버지니아 국기경례법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잭슨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관리도 정치, 조국애, 종교 또는 기타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 있어서 정통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시민들에게 그들이 품고 있는 신념을 말이나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90년대 중반 보스턴 라틴 스쿨의 12세 소년 데이비드 스피리츨러가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충성의 맹세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위선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며 '충성의 맹세'(Pledge of Allegiance)를 거부해 징계위기에 처했을 때 학교측의 징계를 철회시키는 결정적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지금도 연방대법원에서는 국기를 바라보며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충성의 맹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올 8월 덴버 연방지법도 공립학교 학생과 교사에게 충성의 맹세를 요구하고 있는 콜로라도 주법의 잠정 봉쇄를 결정했다. 이 같은 소송이 이어지는 것은 9·11 테러 이후 애국주의 물결을 타고 '충성의 맹세'가 국가적 수준에서 강요되자 이에 저항하는 이들이 나오기 때문.

국가주의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야

이처럼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기에 대한 맹세의 강요는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국가주의를 거부하는 양심의 자유와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영석고 사건은 학교교육을 통해 국가주의가 일상적으로 강요되고 헌법재판소가 준법서약서마저 합헌이라고 결정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자리잡힌 것은 1950년 국무총리의 통첩과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를 통해서였다. 일제 식민지시대 일장기에 대한 경례와 황국신민의 서사 암송을 강요당했던 우리가 해방 후 대상만 바꾸어 고스란히 폐습을 유지시켰던 것. 19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를 거치면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강요됐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는 "개인의 내심을 제도교육이나 국가가 외부로 표현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폐습에 대한 비판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에 속한다. 지난 5월 유시민 의원은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은 군사파시즘과 일제 잔재이며 민주공화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는 발언으로

호된 홍역을 치렀다.

송기춘 교수는 "준법서약서 합헌 결정에서 제시된 의견 역시 오랜 기간 동안 국가교육을 '잘' 받은 덕
으로 볼 수 있다"며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경내]

<목록으로>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30일 (금)
제 250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 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학교측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놓은 사실이 밝혀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영석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넣은 중3학생 박모 씨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관련기사 본지 2003년 12월 24일자> 박 씨는 응시원서에 "전 여호와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국민의례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라고 정중히 적어 넣었으나, 학교측이 "국가, 사회, 학교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사상이나 특수종교를 가진 학생은 불합격"시킨다는 내부 면접기준을 들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는 박 씨를 불합격 처리한 것이다.

이후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경기도 지역 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발표되고 몇몇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힘입어 포기하려던 박 씨의 어머니는 경기도교육청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도 교육청이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놓은 것.

도교육청은 이달 초 박 씨의 어머니에게 보낸 '민원처리 결과' 회신에서 학교측의 불합격 결정은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의 행사"라고 못박았다. 국가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유신독재시대의 케케묵은 대법원 판례(1976년)를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학생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학칙이나 학교의 제반 규정을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교측을 감싼 것이다. 결국 박 씨는 포천시의 한 고등학교에 다시 응시를 해야 했고, 가족들은 포천으로 살터까지 옮겨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심우근 부지부장은 "교육관료들이 학생 인권의 차원이 아니라 학교장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결정"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면접기준을 바로 잡지 않고 도리어 학교측의 손을 들어준 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학교재량'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되는 학교규정이 허용되어 온 오랜 관행을 어떻게 일소할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나아가 '건전한 국가관 형성'이라는 명분 하에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표현할 것을 강제하고 국가주의를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국민의례를 과연 정당한 '교육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충성의 맹세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위선적인 선

언"에 불과하다며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거부했던 12세 미국 소년의 용기에 비해 우리 사회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다.

[배경내]

<목록으로>

한겨레 03,12,23. '국민의례 거부' 고입생 낙방

면접서 종교이유 밝히자 불합격 처리
"신앙자유 침해" "교육적 조치" 논란

경기 의정부시의 한 고등학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민의례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응시생을 불합격 처분해, '종교 박해' 등을 주장하는 시민·교육단체와 '교육적 판단' 이라고 맞서고 있는 학교 쪽이 팽팽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군대에서 종교적 이유로 총을 들지 않아 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예가 있었으나, 학교 입학 과정에서 이런 문제로 논란이 벌어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의정부시 ㅇ고교는 지난 12일 면접고사를 마친 入중학교 3학년 박아무개(16)군에 대해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해, 15일 통보했다. 이 고교 쪽은 "박군이 면접카드에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 국민의례를 하지 못하니 이해해 달라' 는 내용을 써 내 이런 조치를 내렸다" 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비평준화 지역인 탓에 박군은 응시생이 미달한 다른 고교를 찾아 입학을 시도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전교조 의정부지회 등 8개 교육·시민단체는 22일 성명을 내어 "ㅇ고교의 처사는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는 물론 종교 선택의 자유 및 교육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반민주적, 비이성적 학사운영을 하고 있는 이 학교에 대해 당국이 불법 입학 업무 처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문책을 할 것을 요구한다" 고 밝혔다. 이 학교 전기동 교감은 "입·퇴학은 학교장 고유권한이며, 면접 내규에 국가, 사회, 학교의 기본적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 및 기타 이념을 가진 학생은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 며 "박군은 특정 종교 때문에 불합격 처리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례를 하지 못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전체 학생의 교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 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특정종교 이유 응시생 불합격시켜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전교조 의정부지회 등 8개 교육 시민단체는 22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 의정부시의 Y고등학교는 '2004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U중학교 박모(16)군이 종교상 이유로 면접카드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못한다'고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했다"며 "이는 명백한 반민주적, 비이성적 학사운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런 처사는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는 물론 종교 선택의 자유 및 교육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입·퇴학은 학교장 고유권한으로 면접 내규에 국가, 사회, 학교의 기본적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 및 기타 이념을 가진 학생은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전체 학생의 교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합격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jeong@yna.co.kr (끝)

"응시생 종교적 이유로 불합격" 시민단체 반발-학교, "종교 때문 아니다"

【의정부=뉴스시스】

경기 의정부지역 Y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응시생을 불합격 처리했다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측은 "종교를 문제삼아 불합격처리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국가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2일 의정부지역 학교 운영위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U중학교 박모군(16)을 불합격처리했다.

학교가 밝힌 불합격 이유는 면접카드에 "종교상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고 기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같은 처사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물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학교의 초헌법적, 반민주적, 비이성적 학사업무처리에 대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면접 내규에 국가, 사회, 학교 등의 기본적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사상 또는 종교를 가진 학생은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정 종교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행동 등이 국가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인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석범기자 sbjang@newsis.com

→ 관련기사

- '사시 과락' 수험생들 불합격취소 소송
- 안시현, 결국 연세대 '불합격'

- 서울대 수시, 수능미달 불합격 177명
- 면접불합격은 '말솜씨 부족 탓' 21.9%

(경남대 법행정학부)

지난 시평 보기

몇 해 전 고등학교 졸업 기념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다. 사적인 행사이지만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라 그런지 모임은 국민의례로 시작하였다. 그런데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함께 울려 퍼지는 애국가에는 귀에 익은 '국기에 대한 맹세'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군 제대후 국민의례가 약식으로 행해진 모임에만 참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도 여전히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함께 국영방송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녹음된 엄숙한 '맹세'를 듣고 또 '해야' 하는 마음은 실로 착잡한 것이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후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시기에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과 함께 새로운 국가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일제시기의 일장기에 대한 경례, 일본국가 제창, 신사참배강요 등을 겪은 후라 국가권력에 의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우렁찼으며, 특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국기경례 거부 움직임이 일기도 하였다.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 역시 국가에 대한 경례가 아니라 국기에 대한 주목에 찬동하기도 하였지만 1950. 5. 16. 국무총리의 국기에 대한 경례통칙과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를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자리잡게 되었다. 1973년에는 학생교련교육이 실시되었고 1976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에 대한 제적조치에 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 낭송하는 '맹세문'이다(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 제3조). 이 맹세문은 박정희의 독재가 극에 달하던 1970년대에 시작되었던 것이며,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도록 하던 조치와 함께 박정희 정권의 '국가관' 확립교육의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었다.

건강한 국가관을 가지고 또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기에 대한 맹세는 문제가 많다. 첫째,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좋게 보면 중요한 덕목일 수 있다. 충이 단지 국가나 군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확고히 하고 또 그렇게 정한 마음에 충실한 것을 말하고, 誠이란 자신이 말한 바를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충과 성이야 금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장려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충성이 이와 같은 개인의 양심과 마음의 중심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다짐을 요구할 일도 아니며 개인의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태극기 앞에서 이러한 다짐(충성선서)의식을 치른다면 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문제만 아니라 태극기에 일정한 종교성을 가미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둘째, 하지만 이 맹세문에서의 충성은 국가 상징의 하나인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하는 것이고 보면 그 충성은 단지 자신의 양심이나 마음의 중심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공동체는 그 소속구성원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은 중요하고 일정하게 공동체적 구속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존립이유와 그 성격을 묻지 않고 공동체적 구속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이며 그러한 성격을

가지는 한에서만 그 권력행사가 정당화된다고 한다면 국가의 존립이유와 성격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오로지 충성만을 맹세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셋째,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흔히 사용되는 말은 아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은 실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따르는 종교 또는 궁극적 관심과 관련할 때에만 가능한 말이다.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배할 것을 종교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맹세문은 단순한 문장을 넘어서서 국가에 대한 궁극적 고백을 담고 있으며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맹세문'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다짐은 개인이 가지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결코 조화롭게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섯째, 만약 이러한 맹세가 단지 시키니까 하고 학생이나 군인 등과 같은 경우 제재를 제외하고 국민일반에 대한 제재가 없으며 또 억지로 그런 고백을 하길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문제이다. 어찌 엄숙한 고백을 입에 발린 말로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엄숙한 고백과 다짐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무미건조한 말이 되는 순간 우리는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존 밀튼은 아레오파지티카에서 검열제도는 거짓말을 강요함으로써 그 사회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진실이라는 덕목을 해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건강한 국가관과 진실을 교육해야 할 국가는 이러한 맹세문낭송을 통해 이제는 거짓말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황국신민의 서사를 암송하도록 강요했던 것 역시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개인을 삶으로부터 소외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리낌 없이 하게 되면서 우리는 국가가 어떠한 모습을 하든 그 존속과 번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거나 걸의 행동과 속 마음이 다른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국가에 대한 건전한 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국가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존재이며,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또한 국민의 의무임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를 신비화하거나 무비판적이게 하거나 심지어 우상화하는 것은 결코 우리 헌법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반대의 입장이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준법서약서합헌결정에서 제시된 의견 역시 오랜 기간 동안 국가교육을 '잘' 받은 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 국가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감시가 종전보다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과거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문제가 이제는 하찮은 것처럼 다뤄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올바른 국가교육을 위해서도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주간 동아 2001.10.25 美 강요된 충성, 빛바랜 애국주의

백악관부터 초등학교까지 충성서약 행사 ... 방송에선 연일 국가 연주 '바람 잡기'

미국은 지난 10월12일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9·11 테러사건에 대한 전쟁 국면을 맞아 범국민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 열린 '충성 서약회'였다. 이 행사는 백악관에서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열렸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학생들은 수업을 중단하고 "미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한다"로 시작하는 충성 서약문(The Pledge of Allegiance)을 함께 읊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충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소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교실에서 토론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정희 유신체제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차지철 경호실장이 즐겼던 독특한 국기 하강식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질적으로 분위기는 다르지만 밑바닥에 깔린 공통 정서는 애국주의 강조다.

부시 행정부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충성 서약식 참가 여부는 본인 의사에 맡겼다. 중학생 아들을 둔 필자의 한 미

국민 친구는 아들에게 참가하지 말라고 했다. 케이크고 신자인 그는 충성 서약식에 대해 '일종의 강요된 애국주의 행사'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부시 행정부의 견해(views)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지금 미국에는 애국주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라디오나 TV 방송국 등은 미국 국가 연주를 반복해 내보낸다. 지난 한 달 동안 가게에서 성조기가 동날 정도로 불티나게 팔렸다. 집집마다, 자동차마다 성조기가 나부낀다. 테러 충격 이후 미국에서 애국주의 바람이 뜨겁게 불어댄 덕에 중국의 국기 제조 수출업체들이 때아닌 특수를 맞았다는 소식이다. 그런 애국 바람이 아랍계 시민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져 광신적이고 배타적인 애국주의인 소비니즘 증세마저 보인다. 함부로 애국주의 바람을 거스르려 하다가는 살해 위협마저 받는 그런 분위기다.

그러나 이런 애국주의 물결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사는 곳이 미국이고 뉴욕이다. 9·11 테러 참사의 영향으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에서 소수로 나타나지만, 상당수 미국인이 '부시 독트린' 으로 상징되는 부시 정권의 대외 강공책을 비판적이다. 이들은 부시 정권의 아프간 폭격을 반대할 뿐더러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데 대해 "속이 뻘히 들여다보인다"며 반발한다. 9·11 테러는 물론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지만, 왜 미국이 공격당했는지 생각해 보자는 입장이다. 이런 평화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 강제 점령과 정착촌 확장 때문에, 그리고 이 같은 이스라엘의 정책을 미국이 배후 지원했기에 오늘날과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속보이는 행동" 비난 여론도 높아

9·11 테러참사가 있고 난 뒤 뉴욕 맨해튼 중심가의 유니언 광장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아프간 폭격 반대' '전쟁 반대' 를 외치는 평화주의자들이 집회를 열어왔다. 지난 10월7일, 아프간 공습이 처음으로 있던 바로 그날도 3000명 가량의 시민·학생들이 그곳에 모여 "노 워(No War)!" 를 외쳤다. 그 모임을 주도한 한 평화주의자에게 지금 상황에서 애국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어봤더니 그는 "부시의 애국주의는 강패의 마지막 수단"이라 질타했다. '대규모 학살자(wholesale murderers) 훈련을 정당화하는 원리' 가 애국주의라는 극한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구두, 옷을 만들거나 목수일처럼 인간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훈련을 시키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결에 서 있던 또 다른 평화주의자는 미국 애국주의를 "종교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미신"이라고 규정한다. 원시인들이 천둥이나 번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보다 압도적인 힘을 지닌 그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듯, 실체가 분명치 않은 미국 애국주의가 바로 미신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를 펴나. 군산복합체로 상징되는 미국의 지배세력이 조작한 것이 바로 지금의 미국 애국주의란 주장이다.

그는 애국주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아님을 분명히 했다. 요점은 부자와 권력자가 애국주의를 독점해선 안 되며 모든 사람을 위한 애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정권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부자를 위한 정권이라는 지적이다. 미 테네시대학의 윌프레드 맥클레이 교수는 최근 미 계간지 '공익' (Public Interest)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애국주의의 긍정적인 부분은 "자랑스럽고 충성스런 미국인이 반드시 국가에 자신의 주체성을 모두 양도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미국은 잡다한 인종으로 이뤄진 이른바 다민족(multi-ethnic) 사회다. 우리처럼 단일 민족국가가 아닌 만큼 이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이 약하다. 그런데 위기상황에서 언제나 약방의 감초처럼 애국주의를 들먹인 나라가 미국이다. 이것은 학계에서도 연구대상이다. 비판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은 미국 애국주의에 일종의 허상이 숨었다고 말한다. 미국을 위해 싸운다지만, 미국의 실체는 애국주의란 상표로 애매하게 포장돼 있을 뿐이란 것이다.

위기 때마다 들먹이는 단골 메뉴

그 포장을 뜯어보면 미국을 지배하는 계층이 드러난다. 상위 5%를 차지하는 미국의 핵심집단이 WASP다. 백인(White), 앵글로색슨(Anglo-Saxon), 개신교(Protestant)의 머리글자를 합친 미국의 전통적 정치 엘리트 집단이다. 미국 사회를 주도해 온 정책 결정집단이 바로 WASP다. 이들은 빌 클린턴처럼 예외는 있지만 대개 조지 부시처럼 부잣집 아들에 동부 명문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 출신들이다. 대개는 법률이나 경영학을 전공하고 군수산업체를 위해 변호사나 경영자로 일하다 정치 일선에 뛰어든다.

미국이 중요한 전쟁을 치를 때마다 내거는 포스터가 있다. 잘 알려진 샘 아저씨 포스터다. 성조기로 디자인한 모자를 쓰고 정면으로 손가락질하며 위압적인 표정으로 “미국이 너를 부른다”고 말하는 포스터다. 젊은이들에게 자진해서 군대에 입대해 미국을 위해 싸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WASP의 부잣집 도련님들은 어찌어찌해서 병역 대상에서 빠지기 일쑤다. 병역 기피 현상은 미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하층 노동자 아들이나 흑인들이 총대를 메은 것이 미국이다. 이 같은 현상은 1860년 남북전쟁 때나 70년대 전후의 베트남전 때나 마찬가지다. 남북전쟁 당시 뉴욕에서는 불공평한 징집에 항의하는 하층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뉴욕시 전체가 마비된 적도 있다.

미국 애국주의를 정치인들이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50여 년 전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면서부터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지금의 뉴멕시코를 비롯해 당시 멕시코 국토의 절반을 빼앗았다. 바로 그때 성조기가 처음 전선에 등장했고, 당시만 해도 애매한 미국 애국주의란 게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미국 사가 들은 말한다(Telling the story of our America, Monthly Review · New York · Jun 2001).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거쳐 승리를 거둔 바로 멕시코 전쟁에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성조기 아래에서 결합했다는 것이다. 그 승리로 미 기업인과 농장주들은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수백만 명 확보할 수 있었다. 그 후로도 미국은 안정적 자원과 시장 확보라는 국가적 대외정책 목표를 설정해놓고, 팽창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WASP 출신 미국 정치인들의 세계관을 규정하는 한 요소는 개신교 가운데서도 칼비니즘(Calvinism)으로 얘기된다. 칼비니즘은 미국의 시민종교로 미국사 초기부터 정치 엘리트들의 의식세계에 자리잡아 왔다는 것이 미국 학계의 정설이다. 신학적으로 칼비니즘은 ‘적은 곧 악’이라고 규정한다. 9·11 테러사건 뒤 부시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을 가리켜 “그는 악(evil)이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한 것은 이런 바탕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악을 물리치려는 미국의 ‘십자군 전쟁’이 20년 전란에 시달려 온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또 다른 두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다.

< 김재명/ 분쟁지역 전문기자 > kimsphoto@yahoo.com

미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침마다 국기를 바라보며 나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SA...One nation under God..." 우리는 하느님 아래 이 나라의 자유와 공정을 맹세합니다.

8세난 딸을 가진 올해 49세인 유대인 마이클 뉴도씨는 자기 딸은 무신론자이므로 'Under God' 이란 말을 하지 않아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브롱스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그는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교회에 가는 등의 종교적 교육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뉴도씨는 명문 브라운대학에서 의과를 졸업, 의사가 되었으나 법학에도 관심을 두어 UCLA 법대를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된다.

법대를 갈때 타주에서 온 학생이라고 등록금을 더 내라고 하자 타주에 사는 학생이 그로서리에 가면 주민과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왜 교육에만 특별히 더 세금을 더 내느냐고 따져 이 케이스에 해결을 봤다. 1977년에는 유니버설 라이프교회의 목사로 임명되어 본인을 Rev. Doctor michael Newdow라고 사인하고 있다. 그의 주직업은 의사로서 응급실에서 일하나 많은 시간을 법적인 분야에서 보낸다.

그는 1996년 비누하나를 사다가 1전짜리 페니에 'In Got we trust' 라는 말이 새겨진 것을 보고 "나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1998년 플로리다주에서 똑같은 이슈로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했으나 딸이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을 나이이므로 기각당하다가 아이가 학교를 가자 고소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그는 미국을 보호하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Guiding light of life on earth, 즉 순이론주의의 이성적인 생각과 관찰이라는 것이다.

사실 Under God이라면 어느 일정한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라고 써있지 않으므로 모든 종교의 하느님이라고 하겠다. 국회에서도 회기가 시작하기전 초등학교 아이들과 같은 식으로 충성맹세를 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 1조에는 'Establishment Clause' 라는 조항이 있다. 그 조항은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9역 연방법원은 뉴도씨의 고소를 받아들여 'Under God' 은 헌법 제1조에 의해 어긋난다고 선포하였다. 그러자 미국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 공론으로 그 판명을 잠시 보류하고 미국 대법원에서 이 케이스가 논의될 때까지 중지시켜 놓은 상태이다. 미국인의 89%는 'Under God' 를 지지하고 있다.

60%는 공공장소에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29%만이 미국이 크리스찬의 나라라고 생각하며 45%는 미국이 어떤 특정한 종교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입력일자: 2002.7.24 09:06

최 흥 경 이민법전문 변호사

요즈음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충성의 맹세 (Pledge of Allegiance)가 과연 위헌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4일 정부와 종교의 분리와 종교의 자유 등을 놓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게 했던 '충성의 맹세(Pledge of Allegiance)' 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판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성의 맹세란 "나는 국기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며.." 로 시작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으로 미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암송하도록 가르쳐온 문구인데요, 문제는 이 문구에 "신(神) 아래(under God)" 이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학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맹세가 애국적인 맹세인지 아니면 공공의 기도문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심리를 내년 초 시작 할 예정이며 판결은 내년 6월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과연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국교라고도 할수 있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2003.10.15 美 대법원 '충성의 맹세' 위헌여부 결정키로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14일 정부와 종교의 분리와 종교의 자유 등을 놓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게 했던 '충성의 맹세(Pledge of Allegiance)'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판결하기로 결정했다.

충성의 맹세란 "나는 국기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며.."로 시작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으로 미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암송하도록 가르쳐온 문구다. 문제는 이 문구에 "신(神) 아래(under God)"이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학자들은 지난 몇년 동안 이 맹세가 애국적인 맹세인지 아니면 공공의 기도 문 형태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심리를 내년에 시작할 예정이며 판결은 내년 6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무신론자인 마이클 뉴도우가 자신의 9세된 딸이 교사의 충성의 맹세 암송을 따라하는 것이 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카운티 학교당국을 고소함으로써 시작됐다.

뉴도우는 학생들이 그것을 듣도록 강요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교사가 주도하는 암송은 정부의 승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정부가 종교를 우리 사회에 주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지켜지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헌법상 정부가 종교를 승인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이 구절은 특정 종교를 승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6월 미국 제9 순회고등법원은 교사가 이끄는 충성의 맹세를 금지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이 고등법원 관할 아래 있는 9개 서부 주(州)의 공립학교들에서 이 맹세의 암송이 금지된 바 있다.

kdy@yna.co.kr

2003.8.16 美 연방판사, 충성맹세 州法 일시정지

(덴버 AP=연합뉴스) 미국 덴버 연방지법의 루이스 밥콕 판사는 15일 공립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요구하고 있는 콜로라도 주법이 "차별적이고도 분열적"이라는 이유로 그 시행을 잠정 봉쇄했다.

밥콕 판사는 이날 임시 명령을 통해 이 법이 학부모의 사전 통보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충성의 맹세에 불참하도록 허용하면서 교사들의 불참은 허용치않아 교사들에게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밥콕 판사는 또 이 법이 충성의 맹세를 하는 학생들과 하지않는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과 교사들을 서로 대치하게함으로써 분열적 양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시민에게 충성의 맹세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문
제의 콜로라도 주법을 청문회가 열릴때까지 봉쇄하도록 명령했다.

청문회 개최일자는 아직 미정이다.

hcs@yonhapnews.co.kr

2003.5.20 < 유시민 "국기경례는 파시즘" >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개혁국민정당 유시민(柳時敏) 의원은 20일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은 군사파시즘
과 일체 잔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대학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난리가 날 지도
모르겠지만 야구시합하는데 왜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는 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애국이라는 것은 내면적 가치인데 주권자로 하여금 공개장소에서 국가상징물에 국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한번 이의제기를 할테니 어떤 일이 벌
어지는지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자유는 전면적으로 실현하든, 전면적으로 압살하든 둘 중 하나"라면서 "부분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끝)

"방관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참여자로 나서라"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

노엄 촘스키 / 아침이슬 / 272쪽 / 8,500

사회 참여를 부르짖는 실천적 지식인 노엄 촘스키가 이번에는 교육문제에 대해 발언한다. 학생들조차 알고 있는
진실을 교사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그는 깨어있는 교육을 하자고 호소한다. 교사 역시 진실을 가르치고 행동하는
참여자로 나서라고 촉구한다.

/ 리뷰: 조성일 기자 sicho@bookoo.co.kr

[2001/02/26] 이제 우리 독자들은 노엄 촘스키 정도는 안다. 그가 진보적 입장을 지닌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실
천적 지식인이라는 것도 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플라톤, 셰익스피어, 프로이트와 더불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 시대의 가장 소중한
지식인으로 기억된다는 사실도 안다.

그런 촘스키의 교육관을 정리한 책이 번역 출간돼 관심을 끈다.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강주현 옮김·아침이슬
퍼냄)이 그것으로 이 책은 교육이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는 촘스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아울러 전방위적으
로 발언하는 촘스키의 최근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스프리츨러의 충성 거부

교육의 문제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양이다. 요즘 우리 나라 젊은층들에게 불어닥치는 이민 열풍의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들 교육문제를 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는 미국의 교육도 문제가 심각하다니 아이러니컬하다.

어쨌든 촘스키는 오늘날 학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 교육의 새로운 본보기를 향해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넓혀가야 하는지에 대해 발언한다.

"나는 미국 국기와 그 국가가 상징하는, 하느님의 보호 아래 나누어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베푸는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것은 미국판 '국기에 대한 맹세'(The Pledge of Allegiance)이다. 몇 년 전 미국 보스턴 라틴 스쿨에서 12살짜리 소년 데이비드 스프리츨러가 바로 이 맹세를 거부했는데, 학교 당국이 스프리츨러를 징계하려 하자 미국시민자유연맹이 나서 가까스로 징계를 면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거부 이유에 대한 스프리츨러의 설명이다.

"충성의 맹세가 억압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다. 한쪽에서는 멋진 자동차를 굴리고 멋진 집에서 살며 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못된 이웃과 살면서 나쁜 학교에 다녀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충성의 맹세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모두를 위한 정의는 없다."

바로 여기서 촘스키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가 순종을 강요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막는 통제와 억압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꼬집는다. 누구라도 이런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받으면 권력구조를 지탱하도록 사회화되고 만다는 것.

미국의 음모

그런데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교사는 지배계급의 의도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므로 12살 소년이 알 수 있는 진실도 교육받은 교사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다.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물론 교사만이 아니다. 공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언론 모두 한 패거리라고 몰아부친다.

특유의 미국의 정치 음모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촘스키는 최근에 일어난 국제 분쟁과 지역 분쟁에 미국의 계산이 깔리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특히 중남미 국가에서 민주주의 이름으로 미국이 개입하고 폭력도 서슴지 않는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물론 촘스키는 이 책에서 비판만 하지 않는다. 서구 강대국을 강력히 비판하지만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그는 대안도 제시한다.

촘스키가 제시하는 대안은 바로 '깨어있는 교육'. 진실을 가르치고,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방관자'가 아닌 '행동하는 참여자'로 나서라고 촉구한다.

그가 말하는 훌륭한 교사란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학생들이 스스로 진실을 깨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교사라는 것이다.

민주적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세상을 비판적 안목으로 바라보라며 촘스키는 현 사회의 지배계급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 이면의 위선적이고 비인간적인 관행을 적시하면 이면에 감춰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지식인 교사들에게 말한다. 스스로 역사의 방관자로 남지 말고 역사의 참여자가 되라고, 그리고 그 대열에 학생들을 제외시키지 말고 동참하게 하라고.